

제419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7)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4. 현안질의
- 

### 상정된 안건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	3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	3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 .....	3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	3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56) .....	3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	3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
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
1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	26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	26
1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09) .....	26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	26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17) .....	26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	26
1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6
19.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6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6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6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26

제출)	.....	26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출)	.....	26
24. 현안질의	.....	42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교육위 및 과방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교육위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화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각 개념을 서로 인용하여 규정한바 정의규정 순서와 내용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책 대상 업무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목적이 피공제자로 하여금 공제급여 청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일 이후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34조제12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목적을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11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정보 요청 목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자료의 범주를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일부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현재 검정이 완료된 AI 디지털교과서도 교육자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뢰 보호의 원칙 및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교육자료는 검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시도별·학교별로 교육 및 학습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을 계획주기로 하는 제5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30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기본계획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 제5차 기본계획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시행일 및 적용례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으로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책임 주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교육장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 제19조의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4항 및 제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송석준 위원 먼저 하세요.

5분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일정 9항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 장관님,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AI 디지털교과서는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의 첨단교육 이런 환경 속에서 지역 간, 학교 간 여러 가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가장 효율적인 교육교재로, 또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는 그동안에 오랜 연구와 검증 기간을 거쳐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단순히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보고 논의를 해서 온 건데 이게 갑자기, 그 법안이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더구나 이게 검증 절차를 통과한 기준의 AI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보는 부칙을 둠으로 해서 오히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소급해서 기준의 교과서도 교육자료로 보게 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교육부라든가 교육현장, 시·도교육청이라든가 또 다양한 교육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 더구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교육부가 어쩌면 교육 평등의 원칙,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런 제대로 된 AI 교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의 문제점을 한번 좀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 법은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적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다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AI 디지털교과서는 아이들에게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국회에서도 작년 연말에 김진표 의장님의 대표

발의한 입법을 통해서도 교원 연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또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착실히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할 경우에는 현장 도입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역량은 과거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갖추었던 역량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입니다. 이걸 빨리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바꾸어 주어야 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정말 세계로 뻗어 나가고 또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법안은 그런 교육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 할 수 있는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서 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비록 교육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이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 속에 억지로 통과된 법안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국가 교육의 기본질서 또 일반 저소득 국민들의 교육 평등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민생에 반하고 또 국민들의 교육 평등의 기회를, 헌법이 정하는 그 질서에도 반할 수 있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독소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이 법안은 교육 평등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위헌적 소지가 큰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폐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바로 우리 법사위에서 바로 잡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하신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되면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가 상당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 수록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육 격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 해소 또 교육 약자를 위한 보호를 위해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형태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행정부처는 행정부처에서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이 있지만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잘 설득하고 경청하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들의 질문과 또 교육부장관의 답변만 들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제가 충분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분들의 핵심 요체는 뭔지 객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속도가 좀 빠르다 하는 건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감님들하고 협의해서 2025년도는 계획대로 하되 2026년부터는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다. 과목 수도 국어과 과목 같은 것은 안 하기로 했고요, 사회와 과학도 속도를 조절해서 1년을 미루어서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것뿐만 아니고 또 추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들어서 속도 조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속도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정청래 학부모들은 왜 반대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디지털 과몰입이나 중독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디지털기기 활용의 경우에 이것을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짧은 동영상을 자주 본다거나 하면 오히려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AI 디지털교과서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학습도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과몰입의 걱정이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모든 수업을 다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이터치라고 해서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되 또 다른 시간에서는 활동 중심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업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수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들은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또 충분히 홍보해야 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늘 아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법이 몇 개 있습니다, 쟁점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위 간사와 과방위 간사를 제가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에서 통과될 때 어떤 것이 쟁점이었고 뭐가 문제였는지는, 교육위 간사가 조만간 올 거고 이따 과방위 입법 할 때도 과방위 간사를 제가 출석하라고 했으니까요.

○유상범 위원 아니, 간사라고 하면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청래 예.

다음, 김용민 위원님.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과방위 간사, 교육위 간사가 여기에 와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국회 운영이 이게 합리적인지 저 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로 보내 주시면 신속하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게 그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다 들어 보고.

그걸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결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난번에 간호법도 그래서 강선우 복지위 간사를 제가 출석시켜서 발언을 하게 했고요, 이것도……

○**유상범 위원** 그 양쪽 간사를 다 불러서 할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아니……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들으려면 양쪽 간사를 다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입장을?

○**위원장 정청래**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민주당 간사를 제가 불렀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양당의 간사를 얘기를 다 같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균형 잡힌 거지요.

그건 정부의 의견이고 정부의 의견이 아닌 부분, 양당의 입장에서 문제가 됐으면 양당 간사를 같이 불러서 얘기를 들어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아니, 반대 논리,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거고 또 그 장관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민주당 간사들을 출석시키는 게 맞고.

○**유상범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러면 만일 얘기를 듣는다면 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 양당 간사의 얘기를 같이 들어 봐야 되는 거지요, 그게 합리적 이지.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말씀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소위로 넘기시지요, 2소위로. 예? 2소위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 발언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민 위원 질의시간이에요.

○**김용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지금 디지털교과서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건지, 무엇을 교훈으로 남길 건지 그 고민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사실 체계·자구 심사와는 무관한 얘기인데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심사 권한을 넘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그래도 지적을 하셨으니 반박을 몇 가지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새 학년을 고작 3개월 앞두고 매우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대혼란이에요. 교사들에게 연락이 계속 옵니다, 이것 너무 큰 혼란이다. 이것도 계엄 선포하듯이 디지털 교과서도 배포하고 처리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사분……

○**김용민 위원**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보니까 내년 3월 개학 직전에 고작 6시간 연수를 받고 교사들이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들어 보시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용민 위원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재 지금 디지털교과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교육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교육현장 혼란 생기면 또 계엄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핀란드·스웨덴·미국 이런 나라들에서도요 이게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이고 교육 당국도 기업들의 이익을 더, 학생들보다는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다가 문해력 저하로 읽기 점수와 학습 성과 저하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장애가 발견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나라도 지금 엄청난 매몰비용 감수하고 종이교과서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닙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와 디지털디바이스를 활용하고 디지털리터러시를 증가시키겠다, 높이겠다 이 방향 다 좋은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게 아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백승아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디지털인프라 1차 진단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교의 디바이스 수량, 성능, 무선인터넷 속도, 지원 인력 배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간 차이가 오히려 커졌다. 이게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가 45.2%이고 이 중에서 무선 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26.6%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수량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학교가 25.5%나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관리 인력이 배정된 학교는 53%에 불과합니다.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방향이 맞고 여러 가지 다 좋다 쳐요. 이렇게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왜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얘기를 좀 들어야지요. 이것도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교육부는 이게 교육자료로 해서 무상…… 교육자료가 무상 의무교육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무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반론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제대로 검증이 안 됐고 현장에서 교사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문해력 저하 등의 부작용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연수의 부족은 저희가 말씀드린 작년에 통과된 김진표 의장님의 법안에 따라서

특교에서 0.8%를 배당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4000억에 달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역대급의 대규모 연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완수돼서 검정이 최종 확정되는 기간은 지금 최근에 됐으니까 한 석 달 간의 기간인데, 이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또 수업을 개선하는 연수를 하기 때문에 여섯 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으로 교사들을 연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문해력에 대한 문제 부분은 지금 선진국에서도 보면, 말씀하신 그 사례는 스웨덴 사례인데요. 전체 모든 학년에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다가 유치원 단계에서는 좀 너무 빠르다 해서 그것을 철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아니고 AI 디지털교과서라고 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디지털기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정말 오히려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료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특히 교과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의 철저한 규제나 그런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또 이런 지재권의 이슈도 있어 가지고 가격을,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간다는 거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을 하면 결국은 이게 만약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 지위로 격하가 되면 모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고 일부 쓰는 학교들은 쓰게 되고 안 쓰는 학교들은 안 쓰게 되는 정말 격차와 혼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원래 국회법상 법사위에서는 타 상위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권만 있습니다. 원래는 내용 심사는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법사위원님들의 표현의 자유상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것이 저는 법사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이렇게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게 교육위에서 한번 반복한 것의 리피트 어게인(repeat again)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법사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문정복 간사를 제가 출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정복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약 3분간 찬반의 쟁점만 말씀하시고, 앉아 계시고요. 위원님들 혹시 문정복 간사님한테 질문할 분 있으면 제가 문정복 간사한테 질의할 수 있는 위원님을 먼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먼저 한 3분 정도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왜 하자고 주장하는지를 나눠서, 찬반을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먼저 AI 디지털교과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들의 동의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장관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3%였는데 그것을 3.8%로 늘리면서 그것을 AI 디지털교과서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고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저희 교육위원회는 전체가 다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식적으로 잘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

서 넘어갔던 졸속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략 4700억에서 5000억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AI 디지털교과서 구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전산망도 확충을 해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구독료라는 것을 저희가 내게 됩니다. 구독료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 학생들 전체를 계산했을 때 구독료를 보면 예정돼 있는 대략 5000억가량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육위원들은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좀 해서 천천히 연착륙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김용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진국 그 어느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도 아이들한테서 뺏자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AI 디지털 기기를 수업시간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지급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종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있는 문해력 이런 것들을 AI 디지털교과서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은 국회와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선 교육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번 해 보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하자라는 것이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연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시연에 왔던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주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문정복 간사님 계실 때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손을 둡)

○위원장 정청래 한 번 하셨잖아요.

○송석준 위원 한 번 했어도 문정복 간사님께 여쭤볼 수 있지요.

○유상범 위원 그래도 문정복 간사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시켜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아까 하셨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만 하세요, 한번 하셨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반갑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오늘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여야 간사가 같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좀 균등된 답변이 나오지 않겠어요? 좀 아쉬운데 어쨌든 혼자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내가 이주호 장관님 이렇게 답변하는 거로 보면 다 커버가 될 수 있었고 충분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 문제를 지적 하셨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문재인 정권 때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많이 풀어서,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방만한 예산편성 절대 할리도 없고 안 해 왔을 거예요.

이주호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교사 연수라든가 또 이런 쪽에 지출을 했는데 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교실의 혁신을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첨단 방법이고 아직 일선 교사들은 좀 익숙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일부 미비한 학교현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학교 간의 균형적인 제대로 된 교재 여건, 교육환경 조성에 문제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송석준 위원** 그리고 또 교사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 계획도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인프라 면에서도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의 격차는 한 9월 달 정도 조사했을 때였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메꿔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AI 디지털 도입을 하는 데 인프라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재원도 최대한 정부 재정을 아껴 가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뭐로 지금까지, 위대한 대한민국, 노벨경제학 수상자가 칭찬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게 뭡니까? 교육의 힘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아낌 없는 투자를 해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결국은 그런 첨단 기술 환경에 익숙해진 교육환경 만들고 그 미래 세대들이 거기서 또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문정복 위원님께서는 국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국회에는 지금 민주당만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하시지만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이게 한쪽 목소리만 들어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체계·자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 법사위에서 걸러 줘야 될 법입니다. 단순히 이 법사위의 존재는 자구·체계의 문제, 토씨가 어찌고 이

런 걸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아니, 정리해 주시고……

○**송석준 위원** 헌법 정신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위원장 정청래** 문정복 위원에게 질문한다고 해 놓고 왜 질문 안 합니까, 시간 지날 때까지?

○**송석준 위원** 그래서 문정복 위원님, 이것은 저는 교육, 학생들의 교육 평등의 권리가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당리당략적 사고가 아닌 솔직한 양심적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답변하지 마세요.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저 잠시 지방교부……

○**위원장 정청래** 왜냐하면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3분간 아까 발언했는데 또 드려서 3분간 하라고 했으면, 문정복 간사에게 질문을 한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3분이 지나도록 질의하지 않고……

○**송석준 위원** 했어요.

○**위원장 정청래** 3분 지나서 했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질의했어요. 답변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문정복 간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지금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만하게 운영했는데 여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AIDT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유·초·중등·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내국세의 27.9%를 배정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이 그렇게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AIDT나 기타 유보통합 등에 이 교육재정교부금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9400억 원을 삭감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에서 확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겁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을 저희가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니까 실제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급여도 못 줄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면서 실제로 는 게 뭐냐면 이 인건비의 증액분 그리고 시설비 이런 것들을 전부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성을 검증하고 나서 해 보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교육부하고 저희 교육위가 서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던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안이 문정복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신중하게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교육자료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무슨 소리…… 지금 교육부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가자고 말씀……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연착륙하자는 의미에서 교육자료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연착륙하자면 우리가 어떤 제도를 채택할 때 그 제도를 원칙으로 선택하고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는 형태로 가면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교과서로 가자는 것을 반대하고 참고서로 가자 하면서 연착륙을 한다, 이게 논리적 모순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교육에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우리 교육위 조정훈 간사에게도, 한번 와서 3분 정도 똑같이 이유를 말씀 한번 들어 보시지요. 우리가 한 번 얘기하십시오.

○김용민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이제. 법사위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있어요. 정책 토론 다 한 건데……

○유상범 위원 아니, 결국은 이 부분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이고……

○김용민 위원 이게 왜 위헌인데요? 뭐가 위헌인데요?

○유상범 위원 아니, 잘 봐요. AI 교과서를 채택하면……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은 의사진행발언 시간이에요, 지금.

○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들하고 토론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유상범 위원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기본 헌법 원칙에 AI 교과서를 채택하면 무상교육이라는 헌법적 정신이 잘 구현되지만 참고서로 가게 되면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 아주 다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 얘기도 한번 들어 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셔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찬반의 핵심 요약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토론을, 안 하실 수는 없을 텐데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듯이 체계·자구 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면 표결 처

리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교육 평등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문정복 간사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와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제가 17대 초선 때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핵심이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부모 단체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e스포츠, 게임산업 발전법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당장 게임 중독,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고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셋다운제였어요. 그런 장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학부모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게임산업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그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정책의 대상자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94% 반대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설득 작업, 충분히 안심시키고 이런 것을. 그래서 이렇게 미숙한 상태에서 이 법이,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인 비교는 아닐지라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게임산업법, e스포츠법 만들 때 제가 엄청나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불만인 상태지만 e스포츠가 미래 성장동력이다 하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셋다운제를 같이 하면서 안심을 하고 그러면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셋다운제도 사실상 위헌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성숙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문정복 간사님 얘기에도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준비가 덜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송석준 위원** 2소위로 넘기지요. 2소위 넘겨서 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유상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질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추가 토론을 좀 하게……

○**위원장 정청래** 토론을 몇 분 더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 이것은 다 해야지요, 토론을. 지금 다른 법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이 위원장 하시네요, 그냥 앉아서 혼자 다.

○**유상범 위원** 뭘……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토론하세요.

○**송석준 위원** 2소위로 보내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교과서라고 돼 있는 게 이번에 새로 법을 만들어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자는 법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이미 디지털교과서가 돼 있는 법을 개정해서 교육자료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는 게 이미 검정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육자료로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정 완료된 것을 폐기시키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정복 간사님하고 우리 법사위원장님하고도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게, 이게 시기가 빠르니까 준비 절차가 조금 필요한 그런 것 때문에 교육자료로 하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과서로 가는 그 방향 자체가 틀렸으니까 되돌리자 하시는 말씀인 건지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만약에 준비 기간을 위해서 교육자료로 바꾸자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있지요. 우리 체계·자구에 맞게 하려면 경과규정을 뒤 가지고 디지털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시행하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조정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한 겁니다, 법사위에서도. 그런 것조차도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못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부장관님하고 제가 문정복 간사님께 같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육자료로 아예 규정하지 말고 디지털교과서라는 지위를 남겨 둔 상태에서 경과규정을 좀 더 뒤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은 겁니까?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장관님 먼저 말씀해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제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도입되려면 일단 인프라나 디바이스가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다 준비된다. 모든 학교의 한 30% 학교는 10GB까지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고요. 다음에 네트워크가 준비가 되고 또 디바이스도 지금 이제 초 3·4, 중 1, 고 1, 이 네 학년에 도입이 되고 과목도 영어, 수학 그다음에 정보 교과, 이 세 과목에 도입이 됩니다. 지금 이 절차 자체가 단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프라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이 교사의 연수와 말씀하신 교사들의 그런 준비 사항인데 지금 석 달 동안의 겨울방학이 연수하기에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는 지난 학기에 마쳤고요. 선도교사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반응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교사들도 써 보신 분은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사항도 결국은 과몰입이나 중독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AI 디지털교과서는, 특히 최근에 저희가 발견한 에스토니아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디지털교과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을 했는데 지금 PISA 성적, 수학·과학·읽기 성적이 거의 순위가……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동아시아의 최고 국가들에 비해서 순위가 좀 낮았는데 에스토니아만이 4, 5위권으로 약진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그런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물론 속도 조절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또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이것을 교과서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면 현장의 혼란이 저희들은 굉장히 클 것이

다 또 여러 가지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 정도로 커질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문정복 간사님 말씀……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지금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될 일은 뭐냐면 학교에 전체적으로 디바이스나 망 구축이 다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교육위에서 답변하실 때는 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2월 말씀에 정리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정말 국회에서 인정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2023년 10월에 시행령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부지불식간에 이것 교과서 지위로 올려 왔기 때문에 저희 국회가 아직 동의…… 국회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 지위로 인정한다고 하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구독료거든요. 그런데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산정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추계는 구독료가 미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간사님 지적하신 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장경태 위원** 교과서 지정을 법률로 안 하고 시행령으로 한다고요?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망 부분은 저희가 3월 학기 시작 전에 완전히 준비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교과서 지정을 법으로 안 하고 시행령으로 하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정청래** 이게 교육위에서 쟁점이 토론됐다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 있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실은 이런 토론 내용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문정복 간사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한 거니까 불편하셨다면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교육위원장대리 문정복**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부분은 계속 동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토론을……

○**유상범 위원** 다른 법률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송석준 위원** 2소위로 넘기지요, 2소위로.

○**위원장 정청래** 문정복 간사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이것은 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교과서 지정을 법으로 해야지 시행령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장동혁 위원** 다른 법안……

○**위원장 정청래** 다른 법안, 어떤 것 토론을 하시려고……

○**장동혁 위원** 다른 법안, 5항 짧게……

○위원장 정청래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5항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 저한테는 처음에 5항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제2조제3호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장시설 등’ 해서 조금 이 범위에 대해서 여지를 두는 정도의 자구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제가 봐도 교육·문화·복지·체육이라는 것이 위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손대지 않더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제5조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수정의견이 전문위원 의견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조제3호를 그냥 원래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처음에 주셨던 대로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장시설 등으로 조금 더 범위를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주차장 부분은 포함이 되든 되지 않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실무 쪽에서……

○장동혁 위원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원안대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배숙 위원 지금 안건 3항에 보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이게 신설되네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는 시행령에 있었던 그 규정 아닌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8일 날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시행령으로 돼서 이것이 있었다가 삭제가 됐는데 다시 이거를 법률로 살린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교육부 입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약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꼭 이거를 삭제한 이유가 이것을 삭제해도 사분위가 여태까지 학교 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교를 살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배숙 위원 여태까지 그런 사학 분쟁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발휘해서 학교별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줬던 거 아닙니까, 이 시행령 삭제한 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삭제한 지가 10월 8일인데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다시 이거를 그것도 법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다시 개정안을 넣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규제 완화를 하는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가 규제를 완화했는데……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규제 완화를 요구한 주체가 어느 단체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분위의 위원들 일부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사분위의 일부가 그런 제안을 해서 그래서 시행령을 삭제를 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분위에서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분위가 사학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자율성도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법률 개정을 했는데 또 국회……

○**조배숙 위원** 아니, 시행령 삭제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시행령 개정을 한 상황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사실상 사학에 있어서 이런 사학을 어려움에 빠뜨린 그 책임이 있는 이사진이나 이런 분은 다시 그 사학에 관여하는 것은 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일반적인 통념인데 이게 정작 그 분쟁을 다루는 사분위에서 이것보다는, 이걸로 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풀어 주면 오히려 사학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아니어서 이렇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분위 쪽의 의견은 아직도 동의를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사분위는 지금 내부 논의 중이고 국회 상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이미 토론은, 또다시 제가 그걸 하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아니고, 저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유상범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건태 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인데요. 의사일정 5항 학교

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기준의 2조 2호가 3호로 바뀌면서 조문 정리도 하고 거기다 폐교를 넣으면서 조문 정리가 됐는데 주차장이 현행은 있는데 개정안에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주차장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조문의 명문상으로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학교복합시설 여기에서 학교하고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일부러 배제하려고 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결코 없고요. 이게 포괄적인 규정이라서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이건태 위원** 그런데 장관님,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게 결국 개정 법률과 개정 전 법률을 비교해 가지고 교육이나 문화·복지는 그대로 개정 법률에 남는데 주차장만 빠지면 그건 입법자가 주차장을 배제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등’ 자를 넣은 것도 아니어서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주차장이 들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의 그 답변 내용이 현행 개정안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바로 뒷 문장에 보시면 ‘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 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어서 협의 내용에는 얼마든지 포함이 된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만 혹시 국회에서 명기를 하셔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합의를 하시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저의 지역구인 부천 같은 경우는 원도심 이미 굉장히 이 주차시설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밤이면 주민들이 서로 차를 대려고 옆집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복합시설을 지으면 보통 지하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이건태 위원** 거기 주차장을 시에서도 재정 지원한다든가 도에서도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국비 지원이 들어가서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일정 부분을 주민들하고 공유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는 그게……

○**이건태 위원**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면 ‘체육시설로서’라고 이게 제한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주차장은 협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등’ 자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주차시설은 포함시킨다든지……

○**이건태 위원** 주차장을 넣어 주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는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범 위원** 수정안에 찬성, 수정안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거는 이따 통과시킬 때 반영해서, 정부도 반대하지 않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토론……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무슨 혼란 싸움도 아닌데 토론 종결이야.

○박균택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법률 위헌성이나 심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나는 아직 한마디도 못 했는데,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 정청래 일단 토론 종결……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윤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할 순서입니다만, 유상범 간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곽규택 위원 법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표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상범 위원 그렇게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위원장 정청래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일단 토론 종결을 하자고요.

○유상범 위원 무한정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면 그 얘기는 다 한 번씩은 들어 봐야 돼요.

○위원장 정청래 조금 이따…… 유상범 간사님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토론 종결할 것을 일단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거 토론 종결 꼭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표결하지 말고요 소위로 넘겨요, 쟁점 있는 것은.

○위원장 정청래 끼어들지 마시고, 송석준 위원은.

○송석준 위원 제가 왜 끼어드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간사가 아니잖아요.

○송석준 위원 정당한 발언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간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유상범 간사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화내실 건 없지요, 그렇게.

○유상범 위원 법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 의견은 올라왔는데 적어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한 번의 기회는 다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 발언권 신청한 사람 중에 몇 분이 지금 발언을 못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하지 않고 말할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누가 손 듣다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하자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해서…… 국회법을 제가 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의장이나 위원장이 선포를 하고 방망이를 쳤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할 순서입니다만’ 하고 그 전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누구 그러면 ‘토론 기회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방망이는 쳤어요. 방망이를 친 상태에서는 발언권을 허용하지 않고 발언을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그래서 이거는……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제가 지금 방망이를 쳤어. 그래서……

○**유상범 위원** 아니, 치고 안 치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위법을 논의할 때도 의견들이 다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단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일부러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잘 알았고요.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만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토론 종결을?

○**유상범 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를 듣고 나중에 표결을 하시지요, 한번 질의를……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이걸 일단 처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다니까. 그다음에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소위로 넘기면 돼요. 그걸 왜 억지로 표결로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님은 또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네요.

○**송석준 위원** 왜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게.

○**위원장 정청래** 제가 지금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해도 효력이 없다고요. 그 발언을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손 들고 얘기해요,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는데.

○**송석준 위원** 문제 있는 걸 바로잡고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을……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이건 표결 안 해도 되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아니, ‘단’하고 그때 제가 말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손을 들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그다음에 제가 어떤 말씀하실지 알잖아요. 제가 아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건 표결을 안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곤란하지요.

○**위원장 정청래** 표결을 해야 됩니까?

○**유상범 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표결을 하셔야지요.

○**송석준 위원** 표결하지 말고 소위로 넘겨요, 안 되는 것들은 다. 양당 간사님 합의해서 소위로 넘깁시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곽규택 위원** 아니, 이게 뭐에 대해서 표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토론 종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종결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은 쟁점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제가 합리적으로 합니다, 국회법대로. 지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일괄하여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선포하기 전에 ‘이 항, 이 항은, 이 법은 표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유상범 간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먼저 3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육위에서 정부와 여당 간의 어떤 의사일정 합의나 의견을 듣는 기회도 없이 야당에서 일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이 법안 자체가 사분위에서 사실은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해제하라고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 미안한데 토론이 허용되지 않고요. 지금 의사를 진행하실 부분은 ‘몇 항, 몇 항은 표결해 주시고 몇 항, 몇 항은 그냥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예, 그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토론하자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청래** 예.

○**유상범 위원**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해서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령에서 삭제가 된 것을 지금 그대로 삭제된 시행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안으로 올려 온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법안은, 분명히 헌법 31조 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이라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헌법상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규정은 자주성을 위한 규제 개혁을 했더니 다시 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으로 표결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9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안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할 때 헌법상의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참고서로 전략을 시키는 순간 사실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평등이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은 위헌성이 있고 그리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소위로 회부시켜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은 아까 이건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또 교육부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장동혁 위원 5항 관련해서 아까 ‘체육·주차장 시설’인데 그것으로 그냥 한정 열거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등’ 자를 붙일 것인지를 교육부장관에게……

○이건태 위원 저는 한정 열거로 해도 좋지만 ‘등’ 자를 넣어 주면 더 좋지요.

○장동혁 위원 저도 ‘등’ 자를 넣는 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등’ 자를 포함하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등’ 자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등’ 자로.

○이건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정청래 ‘주차장 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주차장 시설’이라고 해야지. 주차장이라고 딱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곽규택 위원 주차장 시설 등.

○유상범 위원 주차장만 하면……

○이건태 위원 현행법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주차장 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 ‘주차장 등’이라는 문구를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동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앞에 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점점점 하고 ‘주차장 시설 등’으로 하는 게, ‘시설’을 넣는 게……

○이건태 위원 그것은 저는 이견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말씀하세요. 어떻게 문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주차장 시설 등’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시설 등’을 넣어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과 9항은 표결 처리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 4항부터 6항, 7항, 8항, 제10항 및 제1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및 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단순 표결이 아니고 2소위로 넘겨서, 이것은 헌법에 반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2소위 좀 한번 열어 봅시다, 2소위 좀 한번. 법안을 이런 식으로 계속 통과시켜 가지고……

○**송석준 위원** 아니, 위헌적 법률을 이렇게 아무 죄책감 없이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주호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죄책감 없이 막아도 돼요?

○**송석준 위원** 일선 교육현장에 가 보세요.

○**김용민 위원** 죄책감 없이 법을 막으려고 그래요, 급한 법을.

○**송석준 위원** 이게 윤석열 정부 공약 과제라 그래서 이것 막는 거예요?

○**김승원 위원**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송석준 위원** 학부모지…… 누가 반대를 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지 이게 대다수 저소득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이성윤 위원** 교육현장에서 반대한다잖아요.

○**장경태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다 안 돼 있어요. 인프라랑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송석준 위원** 교과서로 지정이 돼야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발언권 얻지 않고 상습적으로 발언하는 위원님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발언권을 안 주니까 그러잖아요, 안 주니까.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어제인가요? 외통위에서 하나의 사고가 있었는데, 김석기 외통위원장인가요? 이재정 위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에게 퇴장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행하는 것 보니까, 국회법 145조는 1차 경고 후에 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차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퇴장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 진행을 원활히 잘 못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1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7)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1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3항까지의 과방위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제45조의3이 삭제되는 경우 개정안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강제징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 등의 연구

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기업연구소 등에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 인력 지원,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6조제2항의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효기간’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수정하는 등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연구소 연구개발과 기업연구자 사기 진작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복될 소지가 있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서 연구개발·사업화·생산·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과는 괴리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만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등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안 제7조는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회의의 의사·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안 부칙 중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4조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제1항은 정부는 국가 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전 부처가 관련되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정부가 표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하였으며 주서본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5조제2항에 대하여 개별 법률의 목적은 각각 지향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의 목적에만 부합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저작권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31조제3항 후단에 대하여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 상품으로 명시하고, 국내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가 EU에 진출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는 데이터의 목록 공개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정안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활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정보주체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하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권 침해, 차별 예방 조치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유지가 필요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50조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함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제50조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바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50조제2항 적용 대상에 판매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대상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사실조사 위반 관련 시정명령 대상에도 이를 연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개정안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기존 법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계열회사’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의사일정 제13항, 제1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2항, 15항 등 5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항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법 이것은 산업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가 있어서 중복되고 또 산업현장과의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의견을 해 왔기 때문에.....

## ○유상범 위원 잠깐만, 그것은 결정하기 전에 조금.....

21대에 이 법률과 관련해서 이미 합의가 돼 가지고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그때는 그렇게 정리했던 법안을 22대에 와 가지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서 한번 토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법사위원회로서의 의사진행 원칙은 타 상위법은 내용은 손

대지 않는다,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계류시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에 이의가 있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산업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견을 제시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류를 시키는 것을, 토론을 하시되……

○**유상범 위원** 그러면 2소위로 보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타 상임위에서, 2소위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정리하면 되지 그냥 계류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8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2항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문체부에서는 이견이 있고 그런데 과기부나 과방위에서는 모두 동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간사님 지금 출석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현** 문체부에서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제를 신설해 달라는 건데 저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AI 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조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조항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해서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과기부장관님, 이거는 문체부가 이견은 좀 있었으나 지금 과방위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있는 부분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견을 철회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문체부에서 이견을 철회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손 든 사람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누구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 정향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본법이 예정된 시기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로서 적극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전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습니다만 딱 한가지만 이 법안에 포함시켜 주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과기부하고 또 AI 업계 그다음에 창작 권리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연내에 통과되면 아마 내년 말 시행이 되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AI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 보고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사항은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 확보에 대한 조항 내에 4항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창작행위에 관계되는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된다고 조항을 넣고, 이거는 선언적인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 내용, 방법, 공개의 방법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대안을 과기부 쪽에다가 지속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상임위 계류 시에도 이것보다 더 과한, 조금은 창작자 입장에 더 선 조항들을 제안했었으나, 저희도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업계, 권리자, 학계 그리고 법조계의 분들과 AI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권리자와의 양보를 통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권리자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사위에 올라가게 되어서 저희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가운데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과기부장관님, 잠깐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고 문체부장관님하고도 여러 번 소통을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권한대행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이제 문체부 의견이 해소됐다 하고 제가 통지를 받고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이 조금 위계를 안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정청래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용어도 생소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창작형 뭐라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생성형 AI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생성형 AI에 대한 데이터만 공개하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공개하는데 그 공개의 대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원장 정청래 그것 왜 공개해야 돼요? 왜 공개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서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창작자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업계도 저작권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서 준수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알고 있고.....

○위원장 정청래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말씀하세요.

이 생성형 AI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있으니 그 정보를 공개해서 판별하자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정확하게 말씀 잘 주셨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됐고요.

김현 간사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문체부 국장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정법에는 사실 21대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던 내용이고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담아내다 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법 제정부터 하고 그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지금 김현 간사님 말씀을 듣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거는 통과시키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겠고, 일단 이 법은 개문발차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장관님은 어떠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체부 입장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걸로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에 기본법에서는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문체부뿐만 아니라 개보위든 다른 부서에서도 규제 관련된 것은 차후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사실은 우리가 합의를 본 내용인데……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너무 강해서 장관님도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부분 토론 좀 하려고요.

○위원장 정청래 좀 이따 토론하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류시켜 놓고 좀 더 숙성을 시키는데 이거는 그 부분이 해소됐다 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도 되는 거지요,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문체부에서는 이견을 제시하잖아요.

○위원장 정청래 장관이 이견이 없다라고 오늘 합의를 하고 왔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국장이 지금 와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이건 위계에 문제가 있다’ 지금 장관이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건 총리님이 나서서 정리를 하신 겁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한 번 끌려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철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해 보고 발생하는 문제는 개정안으로 해결될 문제지 지금 시작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장관님, 지금 방금 그 범인데요.

4조에 보면 4조 2항에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적용 예외를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전체를 한 번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의 규정에 보면 고위험, 그러니까 제2조제4호에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정의 규정에 따로 두고 있는 게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국방이나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발되는 인공지능도 저는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대통령령으로 빼면서 아예 정의 규정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이런 영역은 법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면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걸 통해서 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불과 열흘 전에 내란 사태를 겪었어요.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또 인공지능이 국방이나 국가안보 목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시민사회 쪽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법률 체계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게 없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답변드릴까요?

시민사회에서 주로……

○**김용민 위원** 하나 더 하고 같이 답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5조에서도 5조 3항에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하는 것을 포함시켰다가 이번에 처리안에서는 수정하면서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저는 이 부분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굳이 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AI 기본법에 규제와 관련된 것이 아주 강화된 게 EU의 AI 기본법이 되겠는데요. 규제 위주의 법입니다. 그 법에서도 첫 번째 질의하신 국방, 안보는 AI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나라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 AI법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뺀 거고요.

○**김용민 위원** 잠깐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빼자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바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체계상 고영향 인

공지능으로 포함시키면서 빼긴 빼더라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남겨 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규정 방식은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저희가 볼 수도 없이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다 뺀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종의 포괄 위임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를 대통령령에서 빼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조금만 있어도, 국가안보 영역만 조금만 걸쳐도 다 이 법에서 제외시켜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내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내란 할 때 어땠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랑 판사 위치 추적 요청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영역에서 다 빼면서 그런 기술 다 개발해서, 정부의 주요 요인들 위치 추적하는 것 다 개발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통제 못 하고 있고 국회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보완책들을 고민하셨냐는 걸 묻는 겁니다, 이 법체계 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지금 AI 기본법은 기본법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국방 관련된 것은 새로운 법령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면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아까 문체부에서 얘기한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 규정에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고영향에 지금 대통령……

○**김용민 위원** 국방,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은 정의 규정에는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4조 적용범위에서 뺄 수 있게……

지금 국방, 국가안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국방이나 국가안보 목적으로 이 법을 제외시킬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너무 포괄적으로, 조금만 관련성만 있어도 다 뺄 수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의 규정에는 어느 정도 포함시켜 놓자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글쎄, EU가 가장 강력한 규제법인데, 아시겠지만 EU가 그렇게 규제법을 강화시킨 이유는 EU는 AI 쪽에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법을 만든 것이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강한 규제법을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는 다 그걸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또 EU에서도 국방, 안보는 그 나라의 국방, 안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다루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각 개별법으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후속 법안으로 가야 된다 이게 기본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계속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니요, 지금 자구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규제에 어떤 것을 들여와야 되고 이라면 이제……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저도 동의한다고요. 취지는 동의하는데 체계상 고영향 인공지능에라도 포함을 시켜 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포괄 위임해 놓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국방, 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주무 장관으로서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국가안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요. 대통령령으로 다 넘겨 버리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작금의 사태로……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장관님, 저도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는 취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조 2항에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 하나에 의해서 이 법의 적용 대상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이 조항을 쓰면 이 법의 규제를 얼마나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넓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헌법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이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해 버리면 이 법이 상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이 한 단어에 의해서 다 배제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2조 4호에 나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 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중에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인데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해 버릴 수 있겠어요? 국방이라는 이유로 그냥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당연히 국방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라도 촘촘히 따져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통으로 날려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헌법에도 안 맞는 게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국가안전보장에 들어 있어요. 그러나 최소 침해를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날려 버리면 헌법이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최소 침해, 비례의 원칙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대동소이하신 말씀 하시는데 이 AI가 최소한의 규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고 그래서 아까 문체부 상황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개보위 상황도 그렇다, 여럿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국방 관련도 제 생각에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 되려면 국방 관련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장관님, 그거 매우 안이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국방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추가 입법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 규제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건 답이 될 수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역으로 국방이나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주 비상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니까 상식적인, 법 상식에 보면 꼭 대통령이 이것을 다른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우려에 의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국방 쪽의 안전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태 위원** 법을 입법하는데 그런 우려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선한 의지에 맡기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은 법사위를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뒤쪽에 손 드신 분 잠깐 나오세요.

소속, 직책을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보충설명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법에 관련돼서는 EU 법이 기본인데요. 그 EU 법도 사실은 국가안보나 전략자산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즉 산업에 관련된 진흥과 규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통제라든지 안보, 전략에 관련된 것은 별도 기구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국가안보가 빠지는 이유는 저희가 고위험 영향에 해당되는 국가안보를 뺀다는 취지가 아니고 국가전략적으로 안보의 문제는 안보 기관끼리 다시 논의하는 별도의 장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U 법도 보시면 적용 범위에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된다고 명기를 했는데 그 명기의 이유도 그 뜻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것은 이게 민주당, 국민의힘의 논쟁이라기보다는 제정법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찬반이 갈리고, 저도 제정법을 몇 개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법사위 운영 원칙상 체계·자구 심사는 하되 내용은 잡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 법은 일단 개문발차, 제정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아무래도 법사위원회보다는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가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처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오늘 아침 외신을 보면 알트만이 하는 오픈AI 거기가 지금 현재 비영리 법인인데 영리 법인화하겠다 오픈AI에서 발표를 하니까 저커버그 메타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우리가 가진 가야지마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문체부장관하고 좀 협의가 완전하게 됐으면 좋겠다. 저 담당 국장이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체부 내에서도 조정이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일주일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이 우선 개문발차하자, 했으면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빨리 결정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예.

박준태 위원님 토론하고 이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세요.

○박준태 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 법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이게 지금 19개 법안이 병합된 거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만큼 필요성, 시의성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기본법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규제로 볼 것인가 진흥에 방점을 둘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진흥과 규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해서 온 법안이니까 오늘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다만 제가 보니까 40조의 사실조사 관련해서는 기존에 19개 법에 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다 보면 필요한 조문들을 대체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원문에 없는 내용이 제정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식은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해 두고요. 그러나 찬성은 합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법안이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안 이거 제정법인데 산업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21대 국회 마지막에 산업부랑 과기부랑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실무 협의도 거쳤고 차관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이 도출이 됐고 지금 22대에 제출된 안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의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이 이의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근래 조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전체회의에서 계류해 주시면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부하고 한번 이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2소위로 안 넘기고 여기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서 산업부랑 같이 이견 해소하는 게 장관께서는 더 좋다는 말씀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서 할 때 수정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40조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신,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반영고요. 특히

40조 2항의 조사 관련 부분인데요. ‘이 경우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는 부분 수정한 부분을 다 반영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긴급한 현안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제가 2007년도에 방통융합법을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이었고요. 그때 방송과 통신 융합에 관련된 것,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었고요 IPTV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찬반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통신 분야에서는 시기성, 하루빨리 이걸 해야 된다, 특히 IPTV법 같은 경우. 그런데 방송 쪽에서는 안정성, 독립성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담보되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지루하게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정법이니까 통과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조정했느냐면 통신 분야는 자본력이 세고 또 힘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조금 양보를 해라 그래서 3 대 7로 하자. 방송에 투자하는 것을 70% 반영하고 통신에서 반영하는 것을 양보해서 30%, 그러면 결과적으로 5 대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의견 없이 박수 치면서 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정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도 부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하는 것도 그때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5인 체제로 하라 하는 것까지 그때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 찬반이 워낙 많아서, 특히 합의제 운영기구는 처음 해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정법을 만든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찬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래서 출범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해결하는 걸로.

장관님, 그리고 문체부 아까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소를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임 위원** 다른 법률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유상임 위원** 다른 법률안 간단히……

○**위원장 정청래** 다른 법률?

유상임 간사님, 3분만 하세요.

○**유상임 위원** 부위원장님,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지금 다시 왔는데 보니까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규정을 개정했는데, 지금 시행한 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6개월 채 안 됩니다, 7월부터 했습니다.

○**유상임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법에 의해서 결합해서 행하도록 이게 법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방통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저희 과방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 자체도 종전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방위에서 의견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미 다 의견 표명을 했고, 이 법안은 좀 더 지켜보고. 사실 분리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든지 이런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다소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면 8월 달에는 85%까지 떨어졌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9월에는 89, 10월에는 90, 11월에는 9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도 다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정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추이들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분리징수의 가장 근본은 수신료 납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한전 전기료에 부수돼서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수신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 못 한 상태로 사실상 강제 납부해 왔던 과거의 전력의 반성적 고려로서 이게 진행된 것인데 제도가 시행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지금 법으로써 이 제도를 변경하는 이런 식의 입법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제가 잠시 좀 더 말씀……

○**유상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신료 납부의무 자체는 공법상의 의무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료 납부의무는 사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법리적인 성격을 보더라도 합쳐서 징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과방위원장님, 제가 이거 2소위에 보내자 그러니까 또 법안을…… 18번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가 2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아까 위원장께 제안을 드렸더니 장관께서는 또 그냥 여기 본회의에 계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것은 뭐 충분히 장관 선에서도 합의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1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국회에서는 최고 전문가일 겁니다, 수신료 관련해서는. 2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관여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런데 분리징수냐 결합징수냐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정파를 떠나서 수신료 인상입니다, KBS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챗바퀴 돌 듯 항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수신료 정한 것이 40년 전 얘기예요. 다른 모든 물가는 한 10배쯤 올랐을 거예요, 5배, 10배.

그리고 영국 BBC 같은 경우도 1년에 정수료가 얼마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정확한 금액은 저도……

○**위원장 정청래**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금액이 좀 높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월 2500원이에요. 그러면 열 달이면 2만 5000원,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깐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서 거의 뭐 10분의 1 수준 이렇게 돼요. 그래서 KBS 개혁의 첫 번째는 이게 상업방송이 아니고 그리고 또 광고료를 제한한다면 사실은 수신료를 현실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도 국회도 입장이 다 바뀌어요. 왜?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20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제가 17대 문광위 간사 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로 바뀌니까 우리 당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당을 떠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놓고 제대로 방송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야당 때 수신료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당이 주장하면 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었어요.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문제는 이렇게 재원구조가 열악한 상태에서 분리징수를 해도 85%는 걷히더라,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위낙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100% 걷혀도 부족한데 ‘85% 걷힙니다’, ‘95% 걷혔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KBS 재원구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5%가 손해를 보더라도, 평크가 나더라도, 3%가 평크가 나더라도 엄청난 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징수를 해서 좋은 테가 한군데도 없어요. 한전도 싫어하고, KBS도 싫어하고, 시청자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분리징수할 때 이거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이거는 다시 결합하는 게 맞아요. 방통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토론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제 토론 그만하자고요.

○**주진우 위원**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분 하세요.

○**주진우 위원** 수신료 분리징수 부분은 조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수신료 분리징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법에다가…… 지금 현재 이겁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포함해 가지고 KBS 수신료를 걷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불만은 뭐냐면 옛날이랑 TV 수신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OTT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면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KBS를 보지 않는 분들이 그냥 강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징수를 한번 해 봤더니 6개월 만에, 지금 계속 달별로 좀 늘고 있습니다. ‘나 지금 KBS 보지 않는데 왜 내가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환불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본격 시행 후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법체계상으로 보더라도 징수 방법을 법에 이렇게 강제를 해 놓으면 한전에서 어떤 위탁을 받았을 때 이게 사적자치도 있는 것이거든요. 위탁 범위와 상관없이 본인이 징수해야 되는 전기료에 이 수신료를 무조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고민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KBS는 좀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만 경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만경영의 운영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KBS를 전혀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신료를 그냥 납부하는 부분, 이게 정당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부지불식간에 납부’라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돈을 낼 때는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떤 식으로 징수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납부되는 그걸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재원의 결손을 줄인다는 그 접근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재원 확보 방안은 이러한 방법보다는 또 다른, 앞서 수신료 인상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징수 대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체가 현재는 한전이 하고 있는데 한전 자체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서 한전 자체도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자체의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이 역시도 사법적인 거래관계인데 한전이 손을 놓거나 아니면 한전이 ‘우리가 이 징수에 동조하지 못하겠다’ 하면 법에서는 반드시 같이 하고 결합해서 하라고 해 놨는데 어느 사업 주체가 그걸 못 하겠다 해 버리면 사실은 이게 집행할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까지도 고려해서 좀 더 숙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정도로 하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사람들은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칼로 무 자르듯이 되는 게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어렵고. 그러면 그냥 국가 예산을 줘서 보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또 국가 예산으로 KBS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어요.

KBS에서 사업을 하게 하자 그러면 광고를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정성 방송이 된다, 상업성 방송이 된다, 이게 공영방송이 맞냐, 이렇게 난제가 많이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BBC나 NHK 같은 경우도 수신료를 이삼십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올리면 우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있게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KBS 구조 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분리징수를 해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야 입장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토론은 이 정도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2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12항에 대해서는 이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12항은 반대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2항은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 그리고 제2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제14항·제19항 및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사 방법 참고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항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김태규 직무대행님, 최원호 위원장님, 윤영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 24. 현안질의

(12시02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24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하자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오후에……

○위원장 정청래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 좀 하려고 그래요.

기관들이 왜 나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야지요. 잠깐 한 30분 현안질의를 하려고 그려는데……

○유상범 위원 30분 현안질의를 하기……

○서영교 위원 그냥 오후에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30분만 현안질의를 할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정청래 아니, 지금 현안질의를 30분 하다가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기관들이 늦어져 가지고 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법사위 소관 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몇 분으로 하지요?

○유상범 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예,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12·3 사태는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내란 사태가 아니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그것이 국헌문란 목적 폭동의 법적 구성요건에 맞느냐 하는 부분의 사법적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12·3 내란 사태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 전체적으로 비상계엄과 내란이 별개로 논의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국회 행정처에서 준 시나리오입니다.

○유상범 위원 늘 바꾸시잖아요, 필요할 때.

○위원장 정청래 제가 이건 안 바꿨어요.

○유상범 위원 일부러 안 바꾼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예, 일부러 안 바꿨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유상범 간사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에게 ‘윤석열 내란 사태로 말하시오’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상범 간사께서 저에게 ‘윤석열 내란 사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비상계엄 사태라고 말하시오’라고 한들 제가 말하겠습니까? 그건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법사위 소관 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나랑은 협의 안 해요? 저분만 물어봐.

○위원장 정청래 귀가 안 들리세요?

○유상범 위원 7분으로 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박준태 위원 여당 간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조은석 감사원장권한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공수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오셨네요. 이제 탄핵 절차 시작됐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어저께 보니까 재판관 첫 회의 열고 주심도 배당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 답변서·의견서 요구 뭐 이런 절차들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27일 날 오후 2시가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조배숙 위원 현재에서는 절차적으로 지금 상당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사안의 성격상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거기에 반해서 보시면 이재명 대표 역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과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면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면 그리고 또 범죄의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선거로 빠져나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탄핵 정국에도 재판 지연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선거법은 보통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소송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당초 6개월에 종료되었어야 될 1심이 2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또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변호인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현재까지 단 1명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도 즉시 중단이 됐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한 2~3개월 소요됩니다. 그만큼 재판이 늦춰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 지연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사 외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외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장님, 법원행정처가 최근에 선거법 강행규정 270조 기한에 관한 것 지켜 달라, 이런 권고문 일선 법원으로 내려보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심판이 절차대로 제대로 잘 진행되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 준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가 있고, 나라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법관들이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에 필요한 행정처의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첫 번째는 송달 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현재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된 이유가 고의적인 수령 거부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말씀 곤란하신 건 알겠어요, 답변 곤란하신 건 알겠고.

사람이 뭘 주장할 때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도 일단 유죄를 받았는데도 무죄추정 원칙 주장하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라고 못을 박고 이러냐 이거지요.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사실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할지 안 할지. 왜냐하면 검찰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역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경찰과 관련된 수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조배숙 위원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최종적으로는 저희 판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사안인데 만약 그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난립하고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은 법무부차관님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용현의 내란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지금 수사 주체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조배숙 위원 경찰, 공수처, 국방부조사본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났습니까? 7분이 다 지났나요, 벌써?

○위원장 정청래 예, 다음에 하시지요.

○조배숙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민 위원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옆에 앉아 있던 박성재 장관 빨리 체포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런 질문은 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랬지요? 체포 안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다 교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하고 있잖아요. 왜 신속하게 수사 안 하시고 이 공범들이 증거 인멸하고 도주하고 사건 축소하게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

○**김용민 위원**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속 재판 지연, 재판 지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심판이 끝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재판 지연을 여당 위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유상범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박준태 위원** 말씀 가려서 하세요!

○**김용민 위원** 들어 보세요!

○**유상범 위원** 뭘 들어 봐!

○**김용민 위원**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유상범 위원** 공범이라니 이게 무슨.....

○**박준태 위원** 뭐가 공범이에요! 김용민 위원!

○**조배숙 위원** 무슨 공범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자신 있어요? 공범이라는 증거 있어요?

○**김용민 위원** 자, 들어 보세요.

○**송석준 위원** 김용민 위원, 말 조심해!

○**이성윤 위원** 들어 봐요! 들으시라고!

○**김용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엄해제 가결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누가 가결을 못 하게 막겠어요?

○**박준태 위원** 이것 맞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이것 맞는 거예요, 지금?

○**김용민 위원**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더 자제시켜 주세요.

○**곽규택 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회의를 운영합니까!

○**위원장 정청래** 들어 봐요, 들어 봐.

○**김용민 위원**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 곽규택 위원** 김용민 위원님, 좀 자중하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 유상범 위원** 경찰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확인까지 했어요.
-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여당 위원이 지금 뭐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에 그렇게 법원이 넘죽넘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 유상범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선동 하지 마세요!
-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 김용민 위원** 제가 여당, 야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의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그다음에……
- 유상범 위원** 민주당 의원 20명도 내란죄 공범인가요?
- 박준태 위원** 말씀 가려서 하세요!
- 위원장 정청래**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 김용민 위원** 안 들어왔으면 답을 하지 마세요.
- 유상범 위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김용민 위원** 여기 찬성 표결하신 위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 송석준 위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선을 넘고 있어요, 선을.
- 김용민 위원** 저는 찬성 표결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데, 찬성 표결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시간 끌었던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곽규택 위원** 우원식 의장은 시간 안 끌었어요, 그러면 그때?
- 김용민 위원** 추경호는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하게 만들 것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조용히 좀 하세요. 들어 보세요.
-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이것 들어 볼 일입니까? 우리 위원회 이것밖에 안 돼요?
- 김용민 위원** 그리고 지금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어요?
-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 김용민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 곽규택 위원** 즉각 주의 주셔야지요.
- 김용민 위원** 지금 제 시간이에요, 좀 들어 보세요!
- 위원장 정청래** 들어 보세요.
- 송석준 위원** 주의가 아니라 경고! 엄중 경고!
- 김용민 위원**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싶지 않으면 들어 보세요.  
교정본부장!
-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신용해입니다.
- 유상범 위원** 그게 지금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 보세요.
- 박준태 위원** 아니,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으면 됐지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곽규택 위원 그러면 다 이재명 공범이에요, 민주당은?

○김용민 위원 그날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된 직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각 구치소로 공문을 내렸어요. 공문 내린 것 맞아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3일……

○김용민 위원 뭐라고 내렸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비상상황에 준수해야 될 조치사항, 수용 관리 철저히 하고 복무기강 확립하고……

○김용민 위원 몇 시에 내렸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것 처음에 내린 게 한 11시, 제가 지시 내린 게 11시 한 25분경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 공문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잡혀 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파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실제로 그래서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실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실 담당자가, 갑자기 12시경에 둘이 출근을 해서 독거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질 수 있는 얘기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김용민 위원 당신 부하들이 지금 다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당신 부하가 뭡니까, 지금 질의하는데.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하세요?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사실이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수사로 밝혀 보겠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상회의 했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영상회의는 1시 9분부터 10분간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누구랑 했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전국 교정기관장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누가 했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제가 주재를 했고……

○김용민 위원 교정본부장이 하셨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이미 그 시간대는……

○**김용민 위원** 무슨 얘기 했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니까 수용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무기강 확립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이미 그 시간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이미 비상, 영상회의를 준비를 했기……

○**김용민 위원** 보니까 11시경 공문 내렸을 때는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 하라’라고도 내린 것 같던데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12시 20분경에 군이든 경찰이든 5급, 대령하고 이런 사람들 비상대기 조치가 있다는 걸 보고……

○**김용민 위원** 아니, 법무부에서 11시에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 하라고…… 한번 보여 주세요, 공문.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12시 넘어서 5급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다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1시경쯤에 이렇게 이미 공문을 보냈다고요. 이건 우리가 물론 재구성한 것이긴 하지만 공문을 확보했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11시경이 아니고 그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시.

○**김용민 위원** 그러면 왜 5급 이상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했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이것은 비상대기 하라는 게 소집이 아니고 지금 비상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 비상시의 매뉴얼대로 맥에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김용민 위원** 5급 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지금 독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까?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직접 지시 안 했어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지시한 적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구치소장이 지시했겠네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글쎄,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시한 적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런 일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구치소장이 혼자 미쳐 가지고 그 밤에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어느 구치소를 말씀하시는지……

○**김용민 위원** 또 제보자 색출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아닙니다. 지금 뭐……

○**김용민 위원** 제가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구치소장이 혼자 미쳐 가지고 갑자기 ‘국회의원들 잡아 올 수 있으니까 독방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위의 윗선의 지시도 없이?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국회의원이 잡혀 오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에. 경황이 없는데요.

○**김용민 위원** 그 시간에 왜 몰라요, 이미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했던 때인데?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전혀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으로서 회의장 질서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위원님은 개인이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기관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호칭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가급적 이면 발언을 끊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는 제가 발언 끊고 발언권을 다시 드리곤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듣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거나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질문을 못 하게 방해하는 것 또한 질서유지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조배숙 위원** 우리 법사위 진행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금방 김용민 위원님 발언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엄 선포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같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 국회의원을 전부 다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이게 잘못됐으니까, 같은 한통속이니까 같은 내란의 공범이다? 그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 이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신상발언 자격이 있어요?

○**서영교 위원** 당연히 있지요.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비상계엄 해제할 때는 어디 갔다가……

○**장경태 위원**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 자체가 공범이지요.

○**박준태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위원님들도……

○**송석준 위원** 당의 원내대표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의가 있지.

○장경태 위원 원내대표가 공범이지요, 그러니까 국회로 모여야지.

○서영교 위원 자기 임무들도 안 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위원님들도, 제가 지금 답변하잖아요.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준태 위원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 가려서 하세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도,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답변하고 있잖아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돼요! 아니,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청래 박준태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박준태 위원 바로잡아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그렇게 눈 부릅뜨고 화내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알아들어요.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처신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무슨 처신을 잘합니까! 처신을 누가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지금 처신 잘하고 있어요?

○박준태 위원 아니, 동료 위원들 눈앞에서 내란의 공범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만있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본인이 그래 봤자 본인한테 좋을 것 없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양쪽 다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김용민 위원에 대해서도 ‘당신’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에게는 상대방 위원이 발언할 때는 불만이 있겠지만 일단 경청하고 그리고 끝나면 의사진행발언을 해라라고 해서 조배숙 위원이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지금 답…… 의사진행발언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김용민 위원은 지금 신상발언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들이 또 튀어나와서 얘기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지금 경고를 했지요, 하지 말라고. 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이 눈 부릅뜨고 큰소리치길래 또 제가 주의를 줬지요. 균형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고요.

○유상범 위원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제가 또 진행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내란 공범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 상호 간의 주장이에요. 위원장인들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입틀막 할 수는 없고 입틀막한다고 들을 위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로 자제하면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김용민 위원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민주당 위원님들 듣겠습니까? 박준태 위원에게 ‘박준태 위원,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한테 약속하세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 위원장 말대로 말 안 하겠습니다’ 약속하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 다 자제 요청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여당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여당이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당, 2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여당이라는 표현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제발 부탁하건대, 제가 발언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표현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할 위원님들도 아니고 그렇게 한들 지켜지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요.

○**김용민 위원** 짧게 좀 하나……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 신상발언하세요.

○**김용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확하게 제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1당, 2당이라고,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범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범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본회의 표결을 막게 하는 데 동조했을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흥분하십니까? 찔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상범 위원** 잠깐, 지금 무슨 소리예요? 뭘 막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김용민 위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도 그날 계엄 해제를 위해서,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의원들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감사와 존경의 인사도 드린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승원 위원**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저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당하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계엄을 함께 막았다라는 동료 의식도 저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본회의를 계속 지연시키려고 했던 추경호의 그 행동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여당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들을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 증거 인멸할 수 있고 계속 범인 도피시키거나…… 조금 전에도 휴대폰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순진하게 착하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법원행정처장께 말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발끈하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님들 다 공범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잘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오히려……

○**송석준 위원** 추경호 대표를 내란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용민 위원** 그건 맞아요.

○**송석준 위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고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지요.

○송석준 위원 법을 좀 아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되지요.

○김용민 위원 동료 의원들을, 정말로 끌려가서 물리적으로 생명을 다하게 하거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중대한 시기에 본회의를 일부러 끌었다는 것은, 내란 행위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유상범 위원 그러면 우원식 의장도 마찬가지겠네요?

○김용민 위원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 진행했지요. 잘 진행했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우원식 의장도 동의했어요.

○김용민 위원 뭘 동의합니까? 본회의 진행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기다려 주기로 했지요, 우원식 의장도.

○김용민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의 지시를 받고 뭐를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어떤 의원님이 하셨지요? 저는 그때 진짜 저 얘기가 왜 나왔을까, 무슨 맥락이 있을까 했는데 계엄 선포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왔던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당 의원님들 중에 이 계엄에 동조한 의원님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자, 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하고 하는 것이 이게 본류가 아니잖아요, 곁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발언시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됐고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진우 위원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민주당의 오만이 진짜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근거 없이 면책특권 인정된다라고 해서 공범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했을 때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것에 동조하고 있고 그걸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의 혼란을 막고 안정을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해서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을 근거도 없이 모욕해 가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여섯 명의 심리·변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결정 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여섯 명이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소장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주진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 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게 되면 7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삼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삼권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의 그 여러 명, 9명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이게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랑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을 해 왔고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의, 그 해당 사건의 그 정지 조항을 가지고 이걸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리적으로 잘 수긍이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여섯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설부르게 먼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승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때 다수결로 대통령직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소추도 3분의 2,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이 결정을 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섯 명이 심리·변론 가능하다라고 판단 자체를 여섯 명이 한다?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러면 결정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해요? 저는 이건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주진우 위원**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구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러니까 결정문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정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이것은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됩니다. 진행을 하더라도……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여섯 명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현재 이 23조 1항 효력을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여섯 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위원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순서 바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교정본부장하고의 질의에서 잠깐 나왔는데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날 전국 교도관 확대간부회의가 있었고 ‘구치소·교도소 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 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당일 계엄 관련, 그러니까 당일이면 12월 4일 자정까지 포함한 날짜겠지요. 계엄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응 회의를 한 일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교정 당국이 전국 교도관 확대회의를 아마 영상으로 했다면 그 영상 자료하고 회의록이나 회의 참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수사기관이 너무 서로 윤석열 내란수괴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검찰 특수본이 12·3 내란 사태, 내란사건의 핵심 인물 김용현·박안수—오늘 구속됐지요—여인형·곽종근·이진우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 지난 8일 날 검찰과 경찰에 내란사건 이첩을 요구하셨고 경찰 국수본이 이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일부 사건 이첩을 받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일부 이첩을 받으셨는데 지금 검찰은 이첩 안 하겠다고……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요구를 거부했는데 오늘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강행규정이고 의무조항입니다.

○박은정 위원 검찰이 지금 이첩 안 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3 내란 선포 직후에 밤 11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했고 정성우 1처장이 4개 팀장들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에게 지원만 하

면 된다'라고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났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 내란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공모했는지, 이 계엄 사령부하고 공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뭔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올 거다,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할 거라는 것이 어쨌든 서로 간에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 사건의 공조세력입니다.

법무부차관님, 계다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4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등등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 기소를 하게 되면 특수본의 기소가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의 수사는 수사 자체도 위법성이 있고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피의자 윤석열은 4년 전 법무부에서 제가 감찰할 때 감찰조사를 저렇게 거부했습니다. 대면감찰을 계속 거부했고 방문조사를 하러 간 검사들을 다 돌려보내서 쫓아 보냈어요. 그리고 방문조사요구서를 갑자기 대검찰청에 있는 어떤 검사가 법무부에 쫓아와 가지고 던져 놓고 갔어요. 원래 피의자, 당시의 검찰총장, 감찰 대상자는 성실하게 감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불응했고, 그 감찰 불응도 비위 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 당시에. 그런데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이 공조본부 혹은 검찰의 조사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불응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조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어제부터 계속 갖다 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오늘은 또 반송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관저에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은정 위원** 제삼자가 받으면 그것은 송달이 되는데 제삼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석요구서를 안 받고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금 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바로 치십시오. 체포영장 바로 받아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200조의2 1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 자체로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것은 과연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해 놓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불응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피의자 윤석열이 공조본부와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과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본부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반드시 체포영장을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예.

○유상범 위원 김용민 위원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했는데 그 해명과 실제 발언 내용을 파악한 것과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두 분 잘 들으세요.

형사소송법 200조의3(긴급체포)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때’ 이럴 때 체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수괴고 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은정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현재에서 뭘 보낸 것도 안 받고 있고 경찰에서 보낸 소환 통보도 안 받고 반송되고 있고. 이건 뭐냐,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든 상태에서 계속 지체하지 마시고 불응할 우려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걸 적용해서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법조인도 아닌 제가 법조인에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드려야 되겠습니까?

공수처장 얘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소환 통지를 하였고 지금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응할 때 체포한다 이 조건은 안 맞아요, 지금 불응의 조건, 불응의 환경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서 즉각 체포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위원장님께서 법문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적법한 출석 소환

에 지금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조항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김용민 위원 발언과 취지가 비슷한데요. 김용민 위원 있으면 그때 신청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아니, 저희가 스크립트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야 되는데, 취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다릅니다. 김용민 위원의 발언……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고 김용민 위원 오시라 그리고 김승원 간사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서영교 위원 김용민 위원 오면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오면 하세요, 오면.

○유상범 위원 아니 글쎄, 모든 안……

○서영교 위원 지금 곧장 올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1분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 아니, 진행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김승원 위원 당사자가 오면 하세요.

○유상범 위원 당사자가 모든 안 모든 이게 저희가 영상을 보고 바로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김용민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구인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그러면서 이 부분에 저희가 항의를 했지요. ‘들어 보세요’ 하더니 뭐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느냐 하면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이렇게 망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 해제 가결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못 하게 만들었습니까?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그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렇게 법원이 넙죽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김용민 위원이 말한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내란을 공모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단정 지은 표현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여기에 항의한다고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이것은 사과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공범들이,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그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의원이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민 위원이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하는 것이…… 속기록을 삭제해야만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더 이상 회의에……

○송석준 위원 사과를 넘어서 중징계를 해야 돼요, 중징계.

○서영교 위원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김승원 위원이 하거나 아니면 제가……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승원 위원 12월 3일 밤을 자꾸 또 떠올리게 하는데요. 제가 그 직후에 법안1소위 할 때 '동료 의원'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민주당 의원들 또 야당 의원들은 진짜 체포·구속·구타될 각오까지 하고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을 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다 어디 계셨습니까? 동료 의원이라면 지금 헬기가 와서 군인들이 본회의장에 투입되어서 다 뻔한 스토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동료 의원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부터 벌써 '비상계엄을 했지만 내란죄는 아니다. 그러니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 이게 뭐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비상계엄을 갖다가 장난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군인들이 국회를 와서 당직자들, 국회사무처 직원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실탄도 휴대하고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질 것을 그나마 민주시민의 그런 정신으로 폭력을 향해서 이렇게 지켜 왔는데 세상에 지금에 와서 비상계엄은 선포됐지만 내란죄는 아니니 그냥 없던 일로 해 달라는 겁니까? 이게 뭐니까, 지금?

○유상범 위원 내가 내란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위원장 정청래 일단 들어 보세요.

○김승원 위원 이게 법사위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임위 곳곳에서, 외통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12·3 내란죄를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러지 맙시다. 물론 김용민 위원 표현 중에 과한 것도 있지만 보니까 그 문맥 속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꼭 판사를 체포하려는 그런 주어는 아니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오면 다시 그 말을 들어 보도록 하고요.

정말 이게 민주시민의 투철한 그것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막은 거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체포조가 있었고 암살조가 있었고 북한군이 와서 마치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평온한 상태, 그나마 평온한 상태가 유지됐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지한 사과라도 한 번 하셨습니까, 계속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시고?

○유상범 위원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 **김승원 위원** 서영교 위원님께 계속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4년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오늘에 다시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또 국가를 위험천만하게 빠뜨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격, 신인도, 모든 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내란 사태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비상계엄은 반대한다. 누가 찬성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탄핵에도 찬성했어야지요. 아니, 비상계엄은 반대한다면서 어떻게 탄핵을 찬성 안 합니까?

○ **유상범 위원** 아니, 추경호 대표를 내란에 공모했다고 적시한 걸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 **위원장 정청래** 좀 들어 보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그리고 수사받으라고 소환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제외한 김용현 등등 이 내란죄에 가담한 사람은 속속 지금 다 구속되고 있어요.

국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돼 버렸냐면, 윤석열은 내란죄 피의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국군통수권자예요. 내란 피의자 겸 국군통수권자 이게 어울리는 언어입니까? 그래서 탄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란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자를 겸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내란 피의자 겸 국군통수권자를 동시에 겸직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을 했어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12명 정도 탄핵에 찬성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204표로 탄핵이 가결이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쏠리는지를 모르십니까?

○ **곽규택 위원**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용민 위원보고 사과하라 그랬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발언을 사과하란 말이에요, 지금!

○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아무리 당리당략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국익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도 대국민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 되고 윤석열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김용민 사과를 하라는……

○ **곽규택 위원** 김용민 위원 발언 사과하라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성윤 위원** 맞습니다. 사과하세요!

○ **조배숙 위원** 지금 우리 훈계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청래** 그런 사과도 반성도 없이……

○ **박준태 위원** 김용민 위원 막말 사과시키라고요!

○ **곽규택 위원** 나갑시다.

○ **박준태 위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정청래 조배숙 위원도 지난번에 내란죄 관련 발언해서 뭇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곽규택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논리가 달리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조배숙 위원 제가 못 할 말 했습니까?

○이성윤 위원 내란이 합법입니까?

○위원장 정청래 이런 상황 인식하에 김용민 위원이 자기주장을 한 거예요.

○유상범 위원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혼자 하세요. 혼자 다 하세요!

○이성윤 위원 계엄이 합헌이에요?

○곽규택 위원 김용민 위원 발언 사과하라 그랬더니 무슨 말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태 위원 아니, 국민에 대한 사과는 안 하면서……

○이성윤 위원 국민께 사과를 해야지!

○이건태 위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안 하면서 김용민 위원보고 사과하라 그래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본인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그 부분을 지적한 김용민 위원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이성윤 위원 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민께 사과해야지, 국민의힘이.

○위원장 정청래 먼저 사과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김용민 위원 말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렸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렸고, 김승원 위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려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김용민 위원이 사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김용민 위원 판단의 뜻인 거예요. 위원장이 강요한다고 김용민 위원이 하겠습니까? 그런 발언 기회를 드리고, 김용민 위원이 그건 판단할 문제인 거예요. 위원장의 뜻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 위원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은 김용민 위원의 판단에 맡겨 두자 이런 겁니다. 됐지요?

○송석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안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왜 안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그건 위원장 재량입니다.

○이성윤 위원 국민께 사과 좀 하세요.

○송석준 위원 발언을 안 주시니까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저는 김용민 위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서영교 위원 정리를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윤석열 내란수괴라 그랬

어요, 단정적으로.

- 이건태 위원** 단정적이지, 그게 그러면!
- 이성윤 위원** 내란수괴 아니면 뭐니까?
- 송석준 위원**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내란죄로 몰고 있지만.....
- 이건태 위원** 윤석열이 내란수괴지 뭐예요!
- 장경태 위원** 비상계엄을 누가 선포했어요!
- 송석준 위원** 그것은 여기 계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성윤 위원** 윤석열은 뭐니까?
- 박균택 위원** 아니, 지금도 윤석열을 옹호하십니까?
-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 송석준 위원** 법사위 위원들은 피의자면.....
-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가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발언하세요.
- 송석준 위원** 피의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여러분은 존중하셔야 돼요.
- 이성윤 위원** 피의자한테 무슨, 왜 예우를 갖춰요!
- 박균택 위원** 아니.....
- 송석준 위원** 적어도 현재 대통령 지위를.....
- 위원장 정청래** 박균택 위원님, 상대하지 마세요.
- 송석준 위원** 정치돼 있는 상태지 완전히 박탈된 게 아니에요!
- 이건태 위원** 그게 바로 내란 선전이야! 그게 바로 내란 선전이라고!
-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 송석준 위원** 그런데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수괴라고 단정하는 것은.....
- 이건태 위원** 윤석열이 내란수괴지 뭐야!
-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 서영교 위원** 자,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 송석준 위원** 그거야말로 법사위에서 해서는 안 될 아주 못된 나쁜 짓입니다!
- 이성윤 위원** 반성부터 하세요, 반성부터!
- 이건태 위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판사를 체포하려고 그랬어! 그놈이 내란수괴지 뭐야!
-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 송석준 위원** 여러분! 법사위원장 입에서.....
- 이성윤 위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 송석준 위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는 단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당장 취소하시고.....
-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 쓸데없는 소리 계속 떠들라 그리고,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갑니다.
-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 송석준 위원** 본인 스스로.....

○위원장 정청래 계속하세요.

○송석준 위원 여기에 있는 바로 김용민 위원과……

○위원장 정청래 계속 떠드세요.

○서영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 두 분을……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

○송석준 위원 국회법에 의한 중징계 대상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내란을 주도했어요.

○송석준 위원 우리 당에서는 여러분 두 분에 대해서 중징계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송석준 위원이 저기 앉아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어요. 송석준 위원이 저기 앉아서 저 목소리로 윤석열이 내란수괴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렇게 말하는 송석준 위원 이야기에 귀 기울이신 다음에 꼭 심판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 나는 기다 아니다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

○송석준 위원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예우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해 달라는 거지, 지금 기다 아니다 내가 얘기한 적 없어요.

○위원장 정청래 송석준 위원은 계속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듣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경고? 아예 퇴장시키세요. 저 이런 법사위는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계속 발언하세요.

서영교 위원 질의하세요.

○송석준 위원 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이런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 자초한 원인이나 바로 법사위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자,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송석준 위원 여기서 반성하셔야 돼요. 비상계엄이 왜 발생했어요!

○위원장 정청래 질의하세요.

○이성윤 위원 내란 일으켰으니까 내란수괴지!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 앞에 90도로 엎드려서 사과하세요!

○송석준 위원 여러분, 현정질서를 지켜야 될 이 법사위가 현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윤 위원 본인이 하고 있잖아, 지금!

○박균택 위원 내란법을 감싸지는 마십시오.

○장경태 위원 내란 공범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란 공범 선언?

○이성윤 위원 내란수괴를 감싼다는 게 말이 돼요?

○서영교 위원 어떻게……

○위원장 정청래 자, 질의하세요.

○장경태 위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서영교 위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내란수괴를 국민의힘이 전부 다 감싸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경호라고 하는 원내대표가 밖에 당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 추경호는 내란의 공범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당연히 비상계엄, 내란의 공범임을 밝혀둡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날 윤석열이 8시경에 전화해서 법무부장관을 호출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도 그래서 공범이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지게 된 것은 12월 3일 8시경 부부 모임을 하고 있는 박성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이 용산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시 반에 박성재와 윤석열이 만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법무부차관에게 요구합니다.

그날 법무부장관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왔고 무슨 내용으로 여러분을 소집해서 법무부 회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날 온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일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도 현법재판소 사무처장님도 좀 들어 봐 주세요.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검찰을 지원해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법무부, 검찰은 압수수색, 체포해 가면서 검찰이 하지 않아야 될 영역까지 넘나들었는데 끝내는 제보가 나온 거예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검찰이 올 거고 너희들은 검찰을 지원하면 된다. 도대체 윤석열은 검찰에게 무슨 지시를 한 겁니까?

국정원 1처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을 잡아들이고 이재명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김명수도 잡아들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다음에 나온 거지만 김동현 판사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현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동현은 누구길래 잡아들이라고 한 겁니까?

○**현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서영교 위원** 김동현이 누구입니까? 이재명도 알겠고 한동훈도 알겠고 김명수도 알겠고 우원식도 알겠고, 우리가 알 만한 사람은 아는데 김동현은 누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김동현은 누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서영교 위원 누구 재판장이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중의 한 사건……

○서영교 위원 이재명 대표 관련해 무죄를 내린 사람이 김동현이었습니다. 김동현을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의 공범들 사진 한번 띄워 봐 주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지킬 중요한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내란의 공범 사진입니다. 온갖 국방부 사령관들은 다 구속되고 다 내란의 공범이고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고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까지 내란, 비상계엄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가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소집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말이 되는 겁니까?

특수임무단은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왔고 707, 방첩사령관은 선관위에 총을 들고 갔고, 총알을 가지고 갔고.

이완규 법제처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평가는 계속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총알을 들고 총을 들고 선관위를 가라, 그리고 선관위를 뒤져라, 그리고 국회에 총을 들고 가라, 그리고 국회경비대는 모든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으로 가능한 합법적인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공수처장입니다.

공수처장이 공조수사본부를 잘 꾸렸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공조수사본부 지금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란의 공범들 그리고 뒤에 있는 OB라고 하는 사인, 전 방첩사령관이 인사에도 개입하고 그리고 암살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문상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문상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긴급체포가 검찰 단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문상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을 걸로 보여서 우리 공수처에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어떻게 해서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은 수사의 비밀성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문상호의 즉각적인 체포 그리고 하자 없게 군검찰…… 방첩에 관련된 검찰, 군 내란 관련해서는 방첩사령부에 검찰이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방첩사령부에 검찰 모두 불러서 공조수사본부 제대로 꾸려서 문제없게 해 주시고, 우리 국회에서는 바로 특검을 통과시켰고 그 특검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특검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전에 우리 공조수사본부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법사위 나오셨을 때 윤석열 내란죄 피의자에 대해서 해외 출국금지 조치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국회에 나오면서 수사 지휘했고 그날 출국금지 조치됐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게 신호탄이었어요. 이렇게 수사를 빨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는 사실상 체포, 구속까지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고 다 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두실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12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통지하였고 지금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님, 18일 날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어쨌든 적법한 절차를 취해서 소환 통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그에 따른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안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안 나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아무리 소환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우편이 반송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호처에서 막고 있고 못 들어가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긴급체포예요. 공수처장께서 직접 경찰들과 공조를 해서 언론인들 카메라들 대대적으로 이끌고 관저로 가야 됩니다, 즉각 체포하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도 경호처에서 저항할 거예요. 온 국민이 이것을 봐야 돼요.

힘 받는 수사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수사가 맞지요? 두려움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 가장 큰 조건이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즉각 체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듯이 형사소송법 200조의3(긴급체포)의 조건이 돼요.

명분은 축적할 만큼 축적을 했고 즉각체포, 긴급체포의 조건은 차고 넘치고 있고. 그러면 즉각 단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한 모습 보일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서로 상의를 잘해서 지금 12월 18일 자 저희들 소환에 응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늘이 며칠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오늘은 그 하루 전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한시가 급합니다. 핸드폰 바꾸고 증거 인멸하고 하는 것들이 속속들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눈 뜨고 당할 겁니까? 즉각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저희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권이 판사의 재판 결과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불행한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경우는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역시 같은 이유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정권이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이른 경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번 위헌·불법 비상계엄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김 모 재판장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은 사법부를 대표해서 어떤 소회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그게 사실임을 전제로라는 단서를 달면서 그때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위해 또 독립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법원 게시판에 정식으로 올린 일이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법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 외에 더 강화된 그런 의사표시나 권력의 3축의 하나로서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외에 일의 진행 경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일반 판사님들, 다른 재판장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게시판을 계속 보고 있는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판사 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글들이 법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몇 가지 올라왔지만 역시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강력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후에 지금 일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윤석열 내란수괴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첫 번째 불응하고 두 번째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일반론으로는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체포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재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공수처가 또는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갔는데 경호처가 그것을 막아서면 제 판단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조직적으로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거든요. 그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임무인데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명분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 결과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법치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다음에, 체포영장을 그렇게 해서 집행하려 왔는데 결국 경호처의 물리력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걸 사유로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영장 발부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다고 하면 그 해당 영장심사 판사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게 영장이 발부돼서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에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갔는데 역시 경호처가 그것을 무력으로 막아선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은 그 경호처에 대해서 무력을 해제하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의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된다 이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과정에서 공무상 기밀 등을 이유로 해서 진입을 거부한다거나 그런 사정이 만약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건태 위원 그렇게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거부한다면 그 경호처장하고 경호처의 그 방해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 가지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공수처는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건태 위원** 감사원장직무대행님,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호처장님이 경찰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쨌든 정부에 대한 공직감찰 기능을 감사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당연히 으레 그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감사원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태 위원**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녹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이건태 위원**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이야깁니다.

○**이건태 위원**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원도 그들에 대해서 감찰을 시행해서 엄히 징계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지금 국가 작동과 운영 시스템이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호처도 그러한 자세로 내부 공직기강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국가 운영 시스템 차원에서의 공직기강을 점검해 본다면 경호처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태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정 기관의 대표고 또 사법부의 대표니까 법원의 영장 집행이 방해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 박은정 위원님과 순서를 바꿔 주셨는데요. 일곱 번째로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관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선정해서 임명하는 경우도 아니고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해 가지고 추천이 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임명권이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입장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이미 공보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의 멘트가 나가서 기사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께서 주심으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 부인하지 않는 것 보면 그게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좀 파악하신 바가 있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재판소에서 주심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게 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주심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견지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이유는 먼저 그분이 과거에 너무 보수적이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거기가 임명을 했다. 두 가지 이유 외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비상사태 그 바쁜 와중에도 굳이 그 처형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뭔가 아부를 하는 것 아니냐, 선물을 줘 가면서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을 국민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저는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게 공수처장님, 지금 부장검사 공석으로 있는 것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지금 임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석 달 가까이 임명을 안 해 주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현안이 많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사 임용도 안 해 주고 있는 윤석열 씨가 왜 그 재판관님의 처형에 대해서는 그리고 급하게 임명을 해 줬을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재판관 그분의 인격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국민적인 이런 불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전달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조은석 감사원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 17일이 퇴임 일자십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 후임자가 지금 미리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후임자란 무슨 말씀을……

○**박균택 위원** 후임 감사위원.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전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 **박균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두 달 전에 이렇게 먼저 임명을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 생활 3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어쨌든 그렇게 일이 발생했습니다.
- **박균택 위원** 참 희한한 일들을 잘도 꾸미는 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 임명이 결정이 돼 있는데 그날에 그것을 임명 제청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리고 임명권을 행사한 윤석열 피의자, 임명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때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가 돼 있으니까요?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 날짜로 권한도 없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 그거 유효합니까?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저희도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검토했고 아마 인사혁신처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임명 행위가 있는 1월 18일 자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임명 행위가, 인사 발령 행위가 효력이 유효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균택 위원** 그것은 법률가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그에 따른 재청구가 임명 행위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것은 당연히 무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균택 위원** 결정 당시가 아니라 임명 당시를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면 물러날 대통령이 다음 인사 발령해 놓고 물러났을 때 그 명령을 유효하다고 해석해 줘야 하는 문제 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그것은 법률의 문제인데요.
- **박균택 위원** 그러면 권한대행께서, 지금 결정돼 있는 그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 **박균택 위원** ‘당신에 대한 임명은 무효입니다. 취임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사무총장을 통해서 통지서를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감사원에서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균택 위원** 아니, 지금 이 정권에는 소신 있는 공직자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께서, 조은석 대행께서 사무총장을 통해서 통지를 하시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임명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통보합니다라고.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어쨌든 좀 더 세심하게 법률 검토를 한 다음에 당사자에게도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균택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 **박균택 위원** 법무부장관권한대행께 질문 사항이 있는데……
- 시간 더 연장, 1분 추가는 안 되시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김승원** 예.

○**박균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 아니냐 그 질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주겠다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위원장대리 김승원**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 그때는 강일원 재판관님이 주심이었고 그것은 공개를 하셨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도 생중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국민께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때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비공개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비공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아니, 그러면 주심을 지금은 확인을 못 해 주지만 그게 영원히 확인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공식 입장은 주심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아니,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어쨌건 공개가 다 될 텐데요, 재판 조서라든가 속기록이라든가.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과도 아시고 재판이 누가 주심이고 다 아실 텐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결정 후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8년 이후로 결정문에도 주심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주심을 영원히 비공개하신다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방침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그게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중계도 영원히 없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결론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판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혹시 공수처장님, 김건희 출국금지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수사진에서 검토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출국금지 아직도 안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 내란수괴 지명수배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번에 출국금지 정도 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이렇게 각 기관마다 출석 요구해도 출석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지명수배를 해야 됩니다. 지명수배를 했다고 전국에 알리세요.

하나만 공수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12·3 내란 사건, 내란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또 그 여진으로 다른 후속 일들이 벌어질지 공수처장으로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윤 위원** 전두환 내란 사건 보면 19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끝난 시점을 1981년 1월 24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성윤 위원**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입니다. 반란 쿠데타가 끝난 후에 실질적 위험성이 없을 때 내란죄가 끝난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의 수괴가 현직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직무 정지됐지만 현재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못 하니까 위험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정부 명태군 보십시오, 김건희 보십시오. 권한 없음에도, 법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가 V1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처장님, 이 엄중한 사태 보시고 정말…… 지난주에 저희가 윤석열 체포하라고, 구속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구속한다고 약속하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 공조본 등 수사기관들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열심히 수사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공조본이나 경찰이나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구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공수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공수래 공수처였어요. 항상 빙손이라는 뜻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공조본을 구성해서 또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공수처 얼마나 수사 의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공수처장, 그게 무슨 태도야!

○**이성윤 위원** 경호처의 압수수색을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 12월 9일 날 경찰에서 국방부장관 관저 압수수색할 때 경호처에서 진입 못하게 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성윤 위원** 또 12월 11일 날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실패했습니다. 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성윤 위원 이번에 공수처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가니까, 또 공수처에서 전달 안 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

○이성윤 위원 저희도 김건희 출석요구서 전달하려 두 번이나 갔습니다. 갔는데 경호처 방해로 전달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하려 갔을 때 공수처의 방해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공수처장님의 계획은 뭡니까? 어떻게 이것을 공수처의 방해를 뚫고 집행하실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경호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성윤 위원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경호처의 반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를 경고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경고 서면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어쨌든 그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처장님, 지금 내란이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란죄 수괴를 비호하는 것도 내란죄 공범입니다. 단순 부화뇌동만 해도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고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하십시오. 직무 정지가 된 대통령을,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것도 내란죄 공범입니다.

처장님, 구속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십시오.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출석 불응의 우려만 있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전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가지고 가 집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언론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고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 않더라도 지금 공조수사본부에서는.....

○이성윤 위원 처장님 의지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어저께 문상호 정보사령관 검찰에서 긴급체포 불승인했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성윤 위원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 저희들이 자세히 지켜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켜보면 뭐 합니까?

공수처법 말이지요, 8조에 보면 4항 '수사처검사는 검찰청법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고 돼 있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성윤 위원 왜 공수처에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권한을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기능

하게 하고 검찰의 수사권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야무지게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음 법무부차관님, 경찰에서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 영장을 청구하자 불승인했습니다. 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근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법무부는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 보면 그 긴급체포의 권한에 대해서는 현재 군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윤 위원** 형사소송법 256조의2 아십니까? 아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군인도 송치 받아 가지고요…… 군인이 강도짓 하면 경찰이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까? 잡아 가지고 송치했는데, 군인으면 군검찰에 넘기라고 형사소송법 256조의2에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문상호 같은 사람을 영장을 기각하다니 말이 되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래서 저희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다만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2월 13일 자로 복기왕 의원님을 비롯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기 보면 현행 수사 시스템이 약간 한계가 지적돼 있기는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차관님, 됐습니다. 들어 보세요.

지금 검찰이 경찰 수사 방해가 엄청납니다. 보세요. 12월 7일 날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자 이거 영장 청구 안 해 주고 검찰이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집행했지요. 그다음에 12월 9일 날 대통령실 특전사 압수수색영장 청구하자 또 기각해 놓고 자기들이 영장을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이번에는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 영장 기각해 놓고 사실 또 청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찰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가지고 있는 걸 기화로 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수사 농단이에요.

앞에 말한 검찰청법에 의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방해를 하면 나중에 검찰도 이 내란수괴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하십시오.

○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성윤 위원님, 그 중요한 질의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지니까 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중계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요. 꺼지니까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7분 안에 해 주시고, 서영교 위원님은 예외입니다만 안 들려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꼭 해 주시라고. 아무리 7분이 지나서 얘기해 봤자 중계가 안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긴급속보가 떠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기가 막힌 양쪽 속보입니다.

연합뉴스입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소환통지 수령거부 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공수처장이 지금 법사위에서 발언한 게 기사가 제목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냐.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측에서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냐,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여기도 적법 절차 얘기하고 수사기관인 공수처장도 적법 절차에 따른다고 그리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차관, 누가 적법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적법 절차가 맞습니까?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제가 지금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못해서.....

○ 위원장 정청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불응한 것으로는 파악은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차관, 얼버무리지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응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냐.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을 다루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으로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응하는 것이 맞지만 다만 다른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막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법무부차관,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냐.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이게 맞는 말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표현은 좀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정청래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것은 틀린 말이지요.

○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서울고검장 출신 조은석 감사원장대행, 감사원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묻겠습니다.

검사 하실 때, 수사하실 때 피의자를 소환 통보하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했지요? 많이 했지요, 수사하면서?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 피의자가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그것은 법치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안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다른 분 수사는 잘 모르겠고요.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의 성격이 다 다른데 사건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사건을 주동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피의자 소환을 했어요.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사 안 합니까? 아니면 긴급체포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 부르는데,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는데 안 가요. 계속 버텨요. 그러면 수사를 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수사는 하지요.

○위원장 정청래 하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위원장 정청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유효 적절하게 수사의 효율성 따져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조은석 전 검사님, 이런 경우는 강제구인 조치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원 입장이 아니라……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이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윤석열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검사가 계속 소환 통보하는데 안 하고 불응하고 ‘나 안 가’ 계속할 때 강제구인 조치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당연히 체포영장하고 강제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2항에는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가 그럴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강제구인하는데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안 합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아마 공수처장님이나 지금 다른 수사 주재하시는 분들이

다 공정성 시비 문제로 인해서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시에 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그냥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해요. 안 나오고 버텨요. 그래서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가, 구체적으로 영장판사가 전체적인 경위나 맥락에 비추어서 과연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청래** 우리가 국감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검사가 청구한 영장 발부율이 그때 몇 %였지요? 90%가 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압수수색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정청래** 압수수색영장도, 대부분 영장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고 있으면,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100%가 아니라 200%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불응한 사유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참작해서 영장판사가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비상계엄도 분통 터지고 분노할 일이지만 이 윤석열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단 같은데 내란죄 성립 안 된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뭐예요,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이렇게 버티고 있고 반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미적거리냐는 거예요. 긴급체포,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즉각 잡으러 가야지.

이러니까요 윤석열도 밉지만 수사기관도 법원도 국민들한테 다 미움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공조 수사도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라고요’라고 하면서, 법무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란 범죄에 대해서 군인에 대한 검찰 수사권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재 군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검찰은 없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장경태 위원**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 없다고 하면서 수사 안하고 24년 내란죄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수사하고, 법무부가 이 정도는, 검찰이 이렇게 잘못된 수사 행태를 보일 때 법무부장관직무대행으로서 수사 지휘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 떼라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보고나 지휘를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휘권 발동하실 생각 없으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이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여러 가지 법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공수처가 두 번째 사건 이첩 요청했잖아요?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했잖아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장경태 위원 이것도 지금 검찰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빨리 이첩하게 해야지요, 수사권도 없는데. 이태원 참사는 수사권 없다고 수사 안 하고, 이것은 내란죄인데 수사권 없는데 왜 억지로 수사합니까? 저는 이것도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장관대행께서 수사 지휘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현재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장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대행께서 검찰이 이렇게 직권남용하거나 권한 밖의 월권 행사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기관감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검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 전직 법무부장관이 얘기하시잖아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하면 안 된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도록, 노력하도록 조력한다’ 이 정도 얘기하셨더라고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감사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장경태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 국회의 선출, 대법원장의 지명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론에, 대학생들도 이 정도는 배웁니다. 현재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삼권분립의 요체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 권한 또 국회의 선출 권한, 대법원장의 지명 권한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장경태 위원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주옥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2017년 당시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대법원장의 지명권, 국회의 선출권 이것은 형식적인 권리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 선출 권한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명 권한, 지명 권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각각의 삼권분립의 헌법기관의 중요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무처장님 말씀하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국회의 선출 권한을 대통령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대법원장의 지명 권한을 대통령이 무슨 수로 막습니까? 안 하면 그게 대통령이 직무유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당연히 기본도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법제처장님, 방통위원 국회 추천직도 국회 추천 뜻이었던 겁니다. 국회 추천 뜻을 법제처장이 유권해석한다고 막으신 거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위원님……

○장경태 위원 그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답변하지 말까요?

○장경태 위원 막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 추천 뜻을 대통령 권한도 아니고 법제처장이 막을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 질문 안 드리겠고요, 질책하기 위해서 했고요.

4일 저녁에 정말 부적절한 처신을 하셨어요. 대통령 안가에서 법제처장님과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모였습니다. 4명이 모이셨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예.

○장경태 위원 4명이 모이셨다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법제처장 이완규 4명입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확인한 사람만, 차량번호까지 다 깔까요?

○법제처장 이완규 말씀해 보십시오.

○장경태 위원 이완규 법제처장, 수행원과 택시 타고 들어가셨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택시 타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택시 타고. 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지금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박성재 장관, 법제처장 저번에 중인선서까지 하시고 위증하셨으니까 나중에 처벌받으시고요.

6시 50분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안가로 이동하셨고, 7시 20분에 행안부장관 안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님 그때 누구 연락 받고 가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오후에 행안부장관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G80 전기차 2대, 아이오닉5 차량 2대, 카니발 차량, 제가 이것 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다 터질 텐데, 4명 말고 누구 있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4명입니다.

○장경태 위원 군인도 있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없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군인 없었어요? 그런데 군인도 발견됐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다른 차량들은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없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차량번호는 저희가 다 확보해서 조회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곧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법제처장 이완규 없었습니다. 4명입니다.

○장경태 위원 4명 말고 외에 없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없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김홍일 변호사 없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없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안대희 전 대법관 없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전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딱 4명만 거기서 모여서 얘기하셨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량이 많이 들어갔어요? 최소 7대 이상, 최소 15명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다른 차량들은 저희랑 상관없는 차량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안가에서 다른 모임이, 회동이 있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저는 모르지요.

○장경태 위원 안가 사용권자가 누구인데이요?

○법제처장 이완규 .....

○장경태 위원 모르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저는 그런 관계는 잘 모릅니다.

○장경태 위원 법제처장으로서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으시니까, 안가의 사용 권한은 누가 승인합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경호처장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연락만 받고 갔으니까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이날 당일에 대통령 안가에서 최소 법제처장과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을 제외한 다른 회동도 있었다는 겁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신다고 하겠지요, 4명만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차량들은 주요 국가 인물 누구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님, 이런 부분을 협행범 체포하시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영장도 사실 지금 발부 받아서 가도 대통령, 전 대통령..... 웰위된 분께서 아무튼 거부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 수사하셔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그 부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김건희 씨도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십시오. 곧 어마어마한 것 터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엄을 전후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했는지 곧 알려질 텐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빨리 확보하시고 확인 좀 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장경태 위원 지금 법제처장님의 뭐 4명만 있었다고 하지만 그날 모임에 군인도 들어갔고 그날 모임에, 다른 모임일 수 있지만 비슷한 시간에 들어간 차량만 여러 대예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막으려고..... 정권 무너질 때 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보가 쏟아져요, 아주.

그런데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병 확보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사 의지 없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처장님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나 체포영장 발부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전 HID 요원들한테 전화했다 이런 제보들 지금 막 쏟아지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저희들 신속하게……

○장경태 위원 HID가 뭐니까? 요인 암살이 목적인 부대 아닙니까?

출국금지부터 하나하나 신병 확보 차근차근 해 나가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중계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7분 안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질의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법무부장관권한대행, 지금 판사·변호사·법학자들의 ‘검찰, 이 내란 사건에서 손 떼라’ 이런 성명·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자, 보십시오.

검찰이 내란 사태 주범을 김용현으로,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얼마 전의 기사지만.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당시에 윤이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금 정족수가 아직 안 찬 것 같다’ 이렇게 전화를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했다 이것을 국회에서 자백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 특전사령관을 검찰이 조사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용현에 대해서만 물어봤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이것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검찰이 지금 사실상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윤석열을 사실상 덮고 김용현으로 주범을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사실상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선관위 서버에 동원이 됐다, 그래서 계엄 때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동원이 돼서 방첩사령부 여인형 사령관이 지휘관들에게 ‘검찰을 지원해라. 그리고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에게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뭐니까? 검찰이 이 내란의 공범이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공수처장님, 이런 부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내란의 공범일 수도 있다

이런 정황들, 언론 보도들, 제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단서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전현희 위원** 좀 이따가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종근 특수사령관 또 그 외에 707단장이나 국회에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상 양심선언을 했는데 윤석열의 직접 개입에 대해서 이분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데 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주에 의해서 그런 진술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찰이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검찰이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야당 탄압하던 그 본색이 그대로 아직도 야당 탄압, 증거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광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청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세 분이 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뒤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똑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군 인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주해서 그런 진술을 한 게 아니냐, 검사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검사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을 공작을 해서 공범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공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검찰이 지금 수사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 부분을……

○**전현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사에서 다 밝혀진 거고요, 민주당 조사에서. 그리고 확실히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검사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수사 방향을 몰고 간다, 지금 그런 믿을 만한 제보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또 지금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했는데 검찰이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사실상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지금 나서 가지고 전체 사건의 방향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수사 권한이 없으면서 증거 수집을 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건을 나중에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도록 그래서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사실상 덮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또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매우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그런 정황이, 증거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대행으로서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당장 수사에 손떼고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에 이 사건

을 이양하라, 이첩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현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수사 지휘하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사도 다 나온 거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한번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자격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당장 수사 지휘해서 수사 이첩하시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미 사건을 이첩하라고 공수처법에 근거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안가라는 것은 지금 주인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객이 주인의 허락 없이 지금 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분명히 주인에 해당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내지 김건희의 요청이나 허가가 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 사항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전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진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하실래요 지금 하실래요?

○박지원 위원 지금 하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지금 하세요.

○박지원 위원 공수처장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진정이 안 돼요. 나중에 질문할 게요. 똑바로 하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할 때 ‘내란수괴는 영장 필요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할 거냐?’ 뱅뱅 돌린 다음에 나중에 ‘예’ 그랬지요? 체포한다고 약속했지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공수처에다 경찰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엄중한 것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 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당신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체포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지원 위원 체포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예’라고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말한 취지는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여보세요! 제가 동영상 돌릴게요.

그리고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체포영장 필요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호처에서 반대하면 내란 동조범이다 했는데 그때 ‘예’라고 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법제처장님,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법제처장 이완규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고시 같이 공부했고……

○법제처장 이완규 고시 공부는 따로 했고요.

○박지원 위원 법제처장도 8수, 윤석열 대통령도 9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누구누구, 네 분?

○법제처장 이완규 네 사람입니다.

○박지원 위원 네 사람 누구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같이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두 청와대 비서관이 있습니다. 있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청와대 비서관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오케이. 됐어요.

그것이 나오자 지금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당신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바꿨습니다.

○박지원 위원 바꿨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박지원 위원 증거 인멸한 것 아니에요?

○법제처장 이완규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 증거 인멸인 것이지요.

○박지원 위원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거기서 논의된 사항만 지금 현재……

○법제처장 이완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들어 봐요. 그 네 분이 논의된 사항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뭘 논의했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침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기에 저도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숨만 쉬다 왔다고요.

○**박지원 위원** 민정수석도 아는 게 없고……

○**법제처장 이완규** 예,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박지원 위원** 이상민 장관도 아는 게 없고……

○**법제처장 이완규** 이상민 장관도 전혀 아는 게 없이 그냥, 물론 국무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그 당시 있었던 상황도 제대로 잘 얘기도 못 하는 상황이었고요.

○**박지원 위원** 지금 귀하들은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데요 진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박지원 위원** 검경에서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의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바꿨어요. 지금 보십시오. 법제처장이 친구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충고를 했으면 나라가 이 꼴 되겠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법부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검찰은 내란수사권이 없다고 인정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논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정보사령관 문상호를, 경찰도 참 답답해요. 왜 검찰에다가, 체포영장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안 해 주지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정치는 생물이지만 검찰은 괴물이에요. 정치는 민심을 따라가지만 검찰은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조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담화를 발표해서 계엄이 아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줬다 나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김용현이 그다음에 짹 입을 다무는 거예요, 수사를 방해하는. 어떻게 검찰총장 출신이 소환 통보를 받고 안 가는 것, 법대로 안 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소기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정리해 주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으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과 공수처, 국방부, 국수본 다 경쟁적으로 수사하더라도 특검이 되면 다 모일 것 아니에요. 그때 특검에 의거해서 기소를 하면 사법부에서는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성립 안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란죄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재판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

○**박지원 위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수괴로 적시했지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인정한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영장재판 단계가 있고 또 본안재판에 들어가서 1심, 2심에 가서

그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지원 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권성동 대표가 2017년—제가 안철수당 대표였습니다—그때 검사를 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분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현재의 판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공석된 현재 재판관은—박균택 위원이 질문하셨다는 데—임명할 수 있다, 황교안 의원이 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현재에서 잘 얘기해 줬어요, 국회에서 하면 임명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께서 핸드폰 교체한 것, 오늘 법제처장이 처음 발설하신 것 같은데 참으로 묘합니다. 그 안가에 참석했던 박성재, 이상민,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동시에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 봤어요. 핸드폰을 교체하는 열세 가지 이유, 해당되는 것 있으면 얘기하세요. 1위가 충전이 잘 안 돼서, 2위 터치스크린 불량, 3위가 스피커 불량, 과열 그다음에 카메라 오작동, 와이파이 불량, 블루투스 불량, 볼륨 버튼 불량, 전원 버튼 불량, GPS 인식 불량 이런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있습니까?

법제처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열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죽 이렇게 나열했어요. 여기에 해당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시 묻겠어요.

충전, 터치스크린, 스피커, 배터리, 카메라 오작동, 와이파이, 블루투스, 볼륨 버튼, 전원 버튼, GPS 미인식 등 이런 경우에 핸드폰을 교체하는데 그중에서 충전 문제가 33%로 교체하는 이유 1위예요.

법제처장님, 가족들도 보고 있고 친척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교체하는 일반적인 사용자의 열세 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래 봤자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왜 바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이런저런 이유로 바꿨습니다.

○**박지원 위원** 에이, 비겁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2의 윤석열이야.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당신 검사하면서 당신 피의자가……

○**위원장 정청래** 박성재 전 장관은 ‘휴대폰을 제출하면 수사에서 업무 공백이 생겨 가족 사진, 은행 업무 자료 등을 옮긴 것. 증거 인멸 아니야’ 이렇게 답변했다고 우리 보좌관이 지금 자료를 갖다 주는데요. 이러지들 맙시다.

안가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 안 할 자유는 있겠지만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고 또 네 명이 동시에 핸드폰을 바꿨다면 본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아,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핸드폰을 교체하는 열세 가지 이유를 제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열세 가지 경우가 아

닐 텐데 그럼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참으로 민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바꿨어요?

○**법제처장 이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핸드폰에는 그날 있었던 일이 아니어도 제가 정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장 정청래**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렇게 질책하시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위원장 정청래** 달게 받든 쓰게 받든 짜게 받든 시계 받든 수사 대비한 거잖아요.

○**박지원 위원** 그 네 명이 모의한 것이 당신들은 영원히 숨겨질 거라고 알지만 빨각돼요!

○**법제처장 이완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여보세요.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를 탄핵으로 가게 한 제2의 윤석열이야.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떳떳해야지!

○**위원장 정청래** 베트남 속담에 ‘물러간 적은 뒤쫓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의 포용성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속담이기는 한데 물러가지 않고 저항하는 적들에게는 격퇴만 있을 뿐입니다. 아셨습니까?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세요.

○**김승원 위원** 저도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갑자기 또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 수사를 담당하려 했었던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수사를 받을 것 같으니까 4명인가요, 동시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교체했던 그 사건도 떠오르고 그래서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행태를 하는 것 봐서 가슴이 좀 착잡합니다.

핸드폰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을 지켜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되기 때문에 교체는 했다 하더라도 버리지는 않기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번 권유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질의를 오늘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신호를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께 소상히 알려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믿음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12월 3일 그날의 밤 그리고 그 전의 예비음모 단계 또 1차 비상계엄이 실패했을 때 그후에 또 다른 시도가 있었는지 등 전모를 알기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런 전모가 밝혀지면 상응하는 처벌이 자연스럽게 정의롭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21세기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야밤에 갑자기 선포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잊혀진 내란, 잊혀진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했거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가슴 속에 굉장히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오늘도 법사위에서 정말 최선봉에 있는 관계 기관 책임자들께서 국민에게 어떤 안심을 드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신 분들도 정말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법원행정처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1호 현재 연구관이라고 하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께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중대성·명백성의 측면에서 거의 재판관 전원일치, 만장으로 탄핵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밝히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이런 의견까지 피력하셨다는데 그만큼 무겁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장님, 아무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텐데요.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두 분이 선정된 것도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것은 이미 공보관이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그건 오픈을 했고요. 수명재판관, 즉 재판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조율을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 주심 재판관으로 될 가능성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됐다 이것 자체가 왜 오픈이 안 되는 겁니까? 떳떳하게 그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위원님, 지금 재판소에서는 주심 공표는 하지 않는 것을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이유는 지금 벌써……

○**김승원 위원**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아까 말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 발의 피인데 그때는 강일원 주심이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생중계까지 하면서, 강일원 주심이 당시에는 예리하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다 질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중대성과 명백성 면에서 훨씬 더 큰 윤석열 12·3 내란에 대해서는 중계도 거부하고 주심도 못 알아 주겠다고 하고.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SNS에서 돌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관계도인 데요. 보신 적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 사실은 다 맞지요? 그것 모르십니까?

박선영 장관급 진실화해위원장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수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나가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잡아먹는 기생충 정권이다’라고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위원장을 왜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에 장관으로 임명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성남 FC, 두산의 어떤 공익적인 기부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범죄라고 하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탄핵 표결을 바로 앞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탄핵심판이 진행될 걸 알면서 처형을 장관급으로 임명한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되는, 어떻게 보면 로비의 대상자가 되는 재판관께서는 주심 자리에서는 스스로 물러나심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민일영 전 대법관님도 계시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형식 재판관이 1심에서 스물아홉 번 공판절차 진행한 것을 항소심에서 세 번 정도 증인 신문한 다음에 무죄를 유죄로 뒤엎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민일영 대법관이 그때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낸 대법관 중의 한 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가족 카르텔 같잖아요. 이런 오해를 받는 분이 왜 주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지금 옆에 법원행정처장님도 계시지만 현재도 재판관을 처장으로 해서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재판 관여를 안 하니까 지금 와서 ‘나는 모르겠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책임 있는 헌법재판관이 사무처장이 돼서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솔직하게 책임감 있게 답변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위원장 정청래** 지금 공백에 있는 헌법재판관 세 분 국회에서 빨리 인사청문회 해서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는 게 2017년에 권성동 의원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이미 밝혀 둔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그때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 절차가 진행돼서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사례가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위원장 정청래** 권성동 의원도 찬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해도 국민의힘에서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미리 예견하고 2017년에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처장님, 대통령 뜻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적극적 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이번에 공백을 가진 세 명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 추천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극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세 명을 아직 추천하지 못한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만 속히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현재로 보면 탄핵 피소추자에 대해서 며칠까지 답변서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23일까지 하라고 그랬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2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을 봐서 답변서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출과 무관하게 심리는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출하지 않게 되면 저희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촉구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공정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일정으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번 계엄 관련해서요 포고문 1호 정당의 또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위헌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시 모였을 때 굉장히 헌법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심각하게 논의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백한 내란인 것이 헌법 77조에 보면, 전시 상황도 아니고 준전시 상황도 아니고 사변적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 위헌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국회의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 해제권이 국회에만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헌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여기까지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법에 보면 합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 이것은 형법 91조, 헌법 기관에 대한 권능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소멸을 시키는 것이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마치 합법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하라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당시 어떠한 비상 상태인지 그러한 맥락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그것은 위헌이고 위법이고 하지만 설령 그것이 조건을 다 갖춘, 절차를 다 갖춘 거라 할지라도 행정부의 권한을 계엄군이 다 장악해 가지고 마포구청에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고 순천시청에 계엄군이 들어가 있고 언론사 MBC, KBS, JTBC 이런 데 막 들어가 있고 계엄군이 검열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막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사법부·행정부의 권한을 일시로 제한하라 하는 거지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행정부의 권능을 정지시키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민의 기본권 행사 제한이든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회로서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킨 것은 위헌, 불법인데 사법부·행정부의 기능을 계엄군이 장악하는 것은 마치 합법처럼 인식되는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그 판사를 체포해 가라 그리고 남태령 수방사 지하 병커에 가 가지고 그 판사를 막 고문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래서 잡아가겠다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입장을 밝혔는데 너무 얌전하게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 많이 안 떴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법부에서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 후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고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분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5분 합시다, 5분.

○위원장 정청래 5분 하실 분은 일단 끝나고 하세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법원에서도 입장을 내기는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 짧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못 들었습니다만……

○김용민 위원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거기 계시판에 올린 글처럼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권 독립에 대한 결정적인 침해가 되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일로서 진상규명이라든지 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촉구하는 그런 글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한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취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선전하면 처벌받습니까?

한번 법조문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형법에 있습니다.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이니까 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란 선전하면 처벌받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문에 정한 그대로입니다.

○김용민 위원 내란 선전은 지금 진행된 내란 혹은 진행되고 있었던 내란, 진행됐던 내란에 대해서 이것 내란이 맞다, 그 내란은 정당하다, 그 내란 행위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내란을 옹호하는 선전 행위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시간적인 거리에 따라서 평가 역시 직접성이나 관련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직접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조문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혹은 다른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 것은 정당했다 얘기하는 것이 내란 선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란의 공범으로 다 뮤이는 거예요. 제가 내란 공범을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용민 위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 부분은 상세히 검토할 필요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보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용민 위원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구성요건 금방 저도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범

할 것을 선전·선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들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선동은 사전적 개념일 가능성이 높지만 선전은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 직접성·연관성이 충분히 있는 시간이라면 사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십시오.

답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금방 위원님께서 그 구성요건을 지적해 주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박근택 위원님.

○**박근택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처장님 공감하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것은 재판소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택 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님 산하에 많은 헌법재판연구관들이 근무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재판을 빨리 진행되게 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국민들 앞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저희가 그 사건이 들어왔을 때 첫날 바로 브리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준비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준비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안내 설명이 나가서 지금 대부분 언론에도 많이 공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근택 위원** 예,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을 지정한다. 그리고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변론 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을 하였고,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이 지금 올해만 8건이 들어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심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당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저희가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일문일답을 해서 보도 자료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심리 종결하고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3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3주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연구관들께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감안해서 예상 결정문들을 미리 작성을 한다든가 미리 연구를 좀 더 빠르게

한다면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심리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예, 쳐장님께서도 노력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란의 부분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그리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여기서 말이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부화수행은 뭐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취지를, 즉 내란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서 가담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특별히 가담하지 않아도 동조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해도, 동조하는 정도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만큼 내란이라고 하는 죄가 아주 무서운 죄인 거지요.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어요. 그리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고 그리고 총을 들고 왔고 총알까지 들고 왔어요.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국회 본청 문도 부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란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내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내란입니다. 선관위도 가고 모든 곳에 다 갔기 때문에 내란이에요.

제가 행안부차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우리는 우두머리라는 말을 거의 써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두머리는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우두머리라고 하는 용어가 법적 용어 맞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지금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률에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께 묻겠는데요.

경찰이 윤석열의 안가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대요. 왜 이럴까요, 자꾸?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서영교 위원 윤석열 안가에 가 있는데……

법무부차관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핸드폰 바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저야 바꿀 이유가 없지요.

○서영교 위원 바꿀 이유가 없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바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는 뭔데요? 바꿀 이유가 없는데 바꾸는 이유는 뭔데요? 증거 인멸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완규 법제처장과……

○위원장 정청래 정리하시지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세요. 서영교 위원님 이따 한 바퀴 돌고 추가로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따가 아까 기각한 사유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청래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의 우두머리 그리잖아요, 우두머리. 그런데 또 내란수괴도 이렇게 씁니다.

수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우두머리하고 같은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가 방금 국어사전 찾아봤거든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수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수괴나 우두머리나 같은 뜻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수괴’ 이렇게 쓰지 않고 ‘우두머리’ 이렇게 법률 용어를 쓰는 이유가 따로 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법률 용어도 우리말로 바꾸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두머리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랍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 51조에 따르면 지금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인 경우에 심판 절차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 절차가 아마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성이 높은데 이 심판 절차 정지 규정이 적용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정 질서 중단이라는 혼란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절차가 끝난 이후에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돼서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탄핵 절차가 진행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체포·구속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데 체포·구속된, 지금 형사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심판 절차가 정지돼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혹시 피소추인 쪽에서 할 수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심판 절차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심판 절차 정지 규정을 운운하면서 정지를 검토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심판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심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리고 이 헌법재판, 탄핵 절차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증거조사에서 32조의 기록 송부 요청을 할 텐데요, 소추단 쪽에서.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심사규칙 39조 2항에 따라서 아마도 수사기록 원본에 대한 송부는 못 할 거고 인증등본에 대한 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은정 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진행이 되면서 한 10여 일, 17일 만에 수사기록이 바로 송부가 됐습니다, 인증등본이.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록을 빠른 시일 내에 송부 촉탁을 해서, 송부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아마 이 사건은 구속 사건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구속 기소는 빨리 진행이 될 거고 법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송부가 되도록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27일 날 준비 절차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란죄로 구속된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주요 인물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수사기록만 확보가 되면 현재가 충분히 이 탄핵 사건의 심리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그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27일 날 준비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절차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다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태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주심에 대해서 주심의 역할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주심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수명법관을 두 분이라고 했는데 수명법관 두 분이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맞습니다.

○이건태 위원 수명법관의 역할은 뭐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수명재판관의 역할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서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신속하고 또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주심의 역할은 뭐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주심의 역할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부 재판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주심의 역할은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 정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심이라고 해서 재판의 속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설명은 누차 여러 번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의 방향을 정하고 증거 조사의 방법과 정도를 정하고 하는 것을 주심이 전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아닙니다.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이 책임을 지고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서 다 진행을 합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재판장은 누구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은 헌법재판소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형배 권한대행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문형배 재판장님께서, 권한대행께서 재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주심의 역할이 세상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주심의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이건태 위원 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물론입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공수처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호처가 수사를 막으면, 체포영장·구속영장을 들고 가서도 막으면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집행방해로 다 체포하십시오. 모조리 잡아들여야 다시는 내란에 부역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막았지만 체포영장·구속영장 집행은 절대 막을 수 없으니까요 당당하게 그리고 영장을 받아서 윤석열 바로 체포·구속하십시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현재 처장님, 심판 청구, 아까 51조 얘기 나왔는데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하도 꼼수를 많이 부려서, 과거에 자기 징계 사건에서도 꼼수를 많이 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겼지 용산 대통령이 똑같이 과거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김용현 재판이라든가 본인 재판 수사를 이유로 헌법재판, 탄핵심판을 미뤄 달라고 연기 요청하면 받아 주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현재 가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이성윤 위원** 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지금 그런……

○**이성윤 위원**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이성윤 위원** 거기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냈는데 거기에서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탄핵 절차와 법원의 형사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독자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꼼수를 부려서 형사재판 때문에 탄핵심판을 미뤄 달라 이렇게 탄핵 기간을 늘리려는 꼼수가 있을 수 있는데 당당하게 맞서서 탄핵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관련해서 이런 소문 돌고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탄핵재판을 연기한다든가 미룰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저희가 변론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을, 지금 기일 통지를 했고요.

○**이성윤 위원** 하여튼 그런 국민들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염려가 있다는 건 알고 있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제처장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형, 형’ 불렀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동기시고 친하시잖아요?

○**법제처장 이완규** 예.

○**이성윤 위원** 휴대폰 바꾼 것 정말 심각하게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 견진법사도 체포가 됐어요.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인데……

○**법제처장 이완규**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 자리에서 4일 모임에서 과연 뭐가 논의됐는지 좀 밝힐 수 없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그 이상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진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진실이 밝혀져도 진실이 그걸 겁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부화수행이 가담과 동조라고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가담과 동조에 대해서는, 협의자에 대해서 도피나 증거 인멸을 하거나 조력한 것도 가담과 동조에 해당하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결국은 구체적인 경우에는 맥락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이 맞다고 하면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협의자의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돋는다면 그것은 문제겠지요, 심각하게.

사실 저희가 내란죄가 성립했다…… 여러 공방은 있습니다만 불법적·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대해서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연서·서명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다 빨 빼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이 핸드폰을, 박성재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제처장까지도 핸드폰을 바꿨다고 합니다. 저는 4일 회동은 그 주요 인물들이, 회동하고 나서 전후로 핸드폰 바꾼 사람들은 당연히 다 떳떳하지 못해서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무부차관도 최근 한 달 이내에 핸드폰 안 바꾸셨지요, 계엄과 관련돼서?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저 바꾼 사실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안 바꿨다고 하시고.

오동운 쳐장님, 핸드폰 바꾸셨습니까, 한 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 한 달 이내에 핸드폰 바꾸셨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안 바꿨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바꾸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일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떳떳하지요, 다들.

조은석 대행님, 핸드폰 바꾸셨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10년 넘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무슨 고3도 아니고 수능 끝나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왜 유독 법제처장님만 바꾸셨을까요?

법제처장님, 핸드폰 최신 기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용에 대한?

○**법제처장 이완규** .....

○장경태 위원 아니시잖아요, 그것.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민정수석과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과 법제처장이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하고 갑자기 핸드폰을 일시에 다 바꿉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예.

○장경태 위원 법무부차관님, 일단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군사보안실장, 사이버보안실장 등에게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자료 요구했더니 법무부 및 검찰에서는 ‘계엄사로부터 직원 파견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와 관련된 검찰의 인력 또는 검찰의 기술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 받으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 법무부는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대검 산하기관이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장경태 위원 지금 어떤 제보가 있느냐면요 방첩사에서 선관위의 서버를 털었을 때 포렌식 기술이 최고인 대검의 포렌식센터에 맡겨서, 대검 산하 포렌식 인력들을 대기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로서는 요청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검찰총장에게 확인하신 거예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부디 저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신 분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총장님께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사위 진행 중에 계속 속보가 뜨기 때문에 즉각즉각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목, ‘법원,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영장 기각’.

뭐, 기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가 뭔지 아세요? 나 처음 들어 봅니다.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기각 사유래요.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각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첫째로 저도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달라는 서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다 아시는 그 사태 이후로…… 그 전까지는 중요사건 접수 그리고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어서 영장의 접수라든지 또 처리 결과의 예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처에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당시에 법원행정처가 행정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해서 그 시점에서 예규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나 국민의 대표인 여러 의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사실은 행정처로부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또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도가 없어진 상태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복원시킬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정말로 엄중한 사태다라는 것은 모든 법관들이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 판사도 가볍게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이번에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법원 판결을 본인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고 그 판결 한 김동현 판사를 잡아서 죽치겠다, 체포해서 지하 벙커에서 때리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법원으로서는 엄청난 분노와 수모를 겪어 놓고 그것을 지금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영장 기각 사유도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법원은 그러면 어떨 때 영장 발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검사가 영장 신청하면 자판기처럼 쪽쪽 잘 내주더니만 내란 사태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그래서 안가의 폐쇄회로 이런 것 좀 보겠다는데 이것을 못 보게 합니까? 법원이 왜 이래요?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하기 3시간 전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 한장을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구속됐어요. 그것을 수사하겠다는데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

참,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법원 생각하면 이럴 때 환장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참,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우째 이래요!

처장님, 처장님도 판사시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법관이시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왜 이럽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제가 행정처장 입장에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무리 판사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순서가 누구지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현희 위원 법제처장님, 지금 법제처장님 진술에 의하면 안가에 주인이 없이 객이, 손님 4명이 그 집에 가서 그냥 식사도 하고 놀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계엄 다음 날 저녁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안가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입니다, 대통령 안가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법제처장 이완규 있지 않았습니다.

○전현희 위원 거기에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 객들이 남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것, 이것은 주거침입 아닙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그 경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뭔가 집주인의 양해라도 있거나 집주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있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지요.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대통령 내외가 없었다 그러면 음식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주인도 없는데 음식이 그냥 배달된 겁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글쎄요.

○전현희 위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부부나 아니면 적어도 비서실에서 이것을 관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의, 아까 기사에 보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휴대폰을 교체했어요. 거기에 참석한 네 사람 다 교체했고 비서실장도 교체했습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그것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현희 위원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당시 안가에서의 이 모임이 사실상 내란, 계엄 다음 날 대책 회의나 제2의 계엄을 논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률적 대책을 논의했을 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게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법제처장 이완규 그런 의혹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전현희 위원 감사원장대행님, 법원에서는 여기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원은 사실상 영장 없이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직무감찰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전현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원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감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수사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하는 게.....

○전현희 위원 수사 진행 중이라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수사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 특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사실상 수사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전현희 위원 그러니까 초동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감사원은 그동안 기준에 영장 없이 포렌식도 하고 휴대폰도 압수하고 많은 이런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감사를 해온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전현희 위원 저는 동의는 하지 않고, 법 개정은 준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영장이 다 거부되고 있고 실제로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휴대폰도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감사원이 이번에 나서야 할 때인 거지요.

○감사위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예.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비디오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공수처장님, 저렇게 ‘예’ 했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우리 국회의 대선배이신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좋은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했습니다.

긴급체포 한다고 했잖아요? 영장 없이 한다고 하니까 ‘예’ 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박지원 위원 또 얘기하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때 저의 취지는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에 의해서……

○박지원 위원 여보세요. 조용히 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의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당신들이…… 공수처가 생기는 데 얼마나 저도 협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국회에서 검찰은 규탄하면서 공수처에다 힘을 실어 주는데 처장이 ‘알겠습니다’, ‘예’,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공수처장이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긴급체포 했으면, 내란수괴는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었으니까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나옵니다.

보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관에 앉아서 내가 검찰로 갈까, 경찰로 갈까, 출두 쇼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수처장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그런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란수괴는 구속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경찰과 협력해서 긴급체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께서 그것 정확하게 물어 주시는……

○박지원 위원 아니, 그것 설명하지 말고 ‘예, 노’만 하란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듣기 싫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위원 여보세요! 알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박지원 위원 그만해요! 답변하지 마요. ‘예스’ 오어 ‘노’만 얘기를 하라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다시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니까……

○박지원 위원 거짓말쟁이 아니야? 당신 영상 안 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국외로 도피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체포 요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위원님께서도 그런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우리 공수처의 의지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제가 위원님을 속이거나 우리 공수처가 위원님께 거짓 보고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여보세요! 말이 돼? 그러니까 내란수괴가 흠크핑 하듯 경찰로 갈까, 검찰로 갈까.

공수처가 내란수괴는 영장이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것이 법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 출국금지 조치한 건 잘한 건데 출국금지를 한 것은 해외로 도망갈 염려는 없는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국내에 도망갈 장소도 많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 정청래** 아니, 삼청동 안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대통령경호법에 의해 가지고 경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장 정청래** 삼청동…… 제가 얘기할 때는 좀 잠자코 계셔 보세요. 참 이상한 습관을 갖고 계시네.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씨가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어요.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안가에 간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지만 경호가 있지만 거기 간 줄 몰랐어요, 다, 언론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가지고 A4 한 장 주면서 지시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결정적 증거라서 서울청장·경찰청장이 지금 구속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쥐도 새도 모르게 막 다녀요. 도망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해외 출국금지 했으니까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듯이 얘기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당장 체포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위원장 정청래**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체포영장 그러면 발부받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를 받고 있고 또 출국금지를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서……

○**위원장 정청래** 증거 인멸의 우려도 많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적법 절차를 좀 더 저희들이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또 공수처의 설립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공수처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증거 인멸의 우려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커요.

○박지원 위원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뻔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 정청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체포영장을 언제 발부받을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그런 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의 취지를 이해하셔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시고 이러면 좀 너무……

○박지원 위원 손가락질을 당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됐고요.

처장님,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지금까지 하여튼 체포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세요.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수사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현재에 예컨대 피신조사나 참고인 진술조사가 제출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를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이 분명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에는 언론 보도 60여 개가 증거자료, 참고자료로 제출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계엄군이 국회에서 진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CCTV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령관들이 각 인터뷰한 영상들도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아까 조서들이 증거로 제출될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단 언론 보도 부분인데 언론 보도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 부인을 할 때 그때는…… 여기 법무부차관님 계시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김승원 위원 어떻게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검찰 관련된 특수부 사건 조사를 보면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증거자료로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언론 보도 중에 어떤 상황을 담은 그런 직접적인 증거라면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을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재한 경우라면 원진술자의 진술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증거능력에 부동의하면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나

요? 원진술자인 기자를 불렀습니까 아니면 인터뷰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반적으로는 언론 보도는 저희가 초기수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이후에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것을 보통 증거로 제출하지, 언론 그 자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렇지요. 언론 보도는 증거능력을 얻어서 증거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실무상 많지는 않습니다.

○김승원 위원 취재원을 또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도한 기자들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쉽지는 않습니다.

○김승원 위원 진술 과정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거고.

그러면 피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중요한데 보니까 12월 10일 날 검찰에서 경찰·공수처에 '수사 동시 진행하겠다'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12월 13일 날 검찰에서 경찰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 내용 공유 요청을 거부했어요. 이것 왜 거부를 합니까? 협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김용현은 검찰에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피신조서를 받았겠지요. 그러면 같은 국가기관인 또 어떻게 보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보는 경찰에서 요구를 하면 공유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고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승원 위원 검찰이 구속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예컨대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용현 씨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수사기관 간의 공조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공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되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공조 없어도.....

○위원장 정청래 이따 하세요. 추가질의를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같은 생각입니다.

○김승원 위원 같은 생각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위원장 정청래** 탄핵 인용과 기각의 판단 기준이 위법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인용하고 기각하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위원장 정청래**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위법성 같은 경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헌법과 계엄법·형법 내란죄 다 위반한 것.

그런데 중대성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두 시간 정도 내란 한 걸 가지고 이게 뭐 폭동이냐, 이게 뭐 내란이냐, 나는 내란은 인정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에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피해액이 얼마나 큅니까, 지금?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위원장 정청래** 강도가 길을 가다가 칼로 찔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자가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현장 사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언론이라고 증거능력 부동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은행강도가 은행을 털었어요, 권총을 갖고. 그게 CCTV에 나왔어요. 그 장면을 언론이 보도했어요.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자체로 증거능력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있습니다.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왔어요. 그것을 여러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것 증거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난입했어요. 증거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마찬가지로 증거능력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 일곱 개 문을 경찰이 막고 출입을 봉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언론에 나왔어요. 증거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서 본회의장을 침탈하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막는 장면, 이건 다 증거능력이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은 증거 부동의하는 그런 경향성이 짙은데 실제

로 이번 내란 사태에 관련해서는 가장 큰 증거가 텔레비전 생중계입니다. 온 국민이 그것을 봤어요. 그게 가장 큰 증거 아니겠어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예,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소환 통보 이런 것은 응하지도 않고 나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것은 수사기관이 봤을 때 좀 꽤 썸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꽤 썸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꽤 썸하기도 하고, 법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형소법 절차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의했고 재보충질의는 몇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손 드시네.

몇 분만 하시지요, 정리해서 한 세 분 정도.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아까부터 오매불망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고요.

한 세 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어떻게, 하시지요?

○김승원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만 6시 전까지는 해 주셔도 어떠실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이렇게 세 분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누구?

○박지원 위원 박지원 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정도 하시지요, 그냥.

○서영교 위원 서영교는요?

○위원장 정청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아까 그 뒤에 하라고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놓쳤어요.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서영교·이건태·전현희·박지원 위원, 이렇게 네 분 정도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대신 3분 되면 딱 끊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제가 아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완규 법제처장님!

○법제처장 이완규 예.

○서영교 위원 핸드폰을 바꿔서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어요.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박지원 대표님의 질의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놀랐습니다. 법제처장까지 핸드폰을

바꿨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지요.

그러면 오늘 그것 묻겠습니다. 핸드폰을 바꿨어요. 새로운 핸드폰이 있습니다. 기존의 핸드폰은 버리셨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갖고 계시겠지요?

저는 오늘 증거 인멸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그러겠지요? 그렇게 오늘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셨고, 원래 갖고 있던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증거 인멸입니다. 이 중요한 내란죄에서, 그것도 윤석열의 안가에 모였던 네 사람의 이야기.....

○법제처장 이완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그야말로 저녁 행사였고요.

○서영교 위원 우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핸드폰은.....

○법제처장 이완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핸드폰은 갖고 계시지요? 그 핸드폰 버리지 마세요. 증거 인멸하지 마세요.

답변을 못 하는군요.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법무부장관, 원래 있던 핸드폰 그대로 증거 보전하세요.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모두 다 원래 있던 핸드폰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내란에 동의하고 모의했던 동조자라서 우두머리와 함께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오늘 이야기해 두고요. 만약에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는 공수처장이 바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끝내 답변을 못 하시는 거지요? 답변하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에 왔던 우리 군인인 아들들에게 나가기 전에 유서를 쓰게 했고 그리고 채혈을 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 아이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바깥과 차단시켰답니다. 거의 감금이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채혈을 왜 하는 거야?’ . 여기에 파견 나온 특수임무단, 방첩사 이쪽 아이들을 왜 가둬 놓고 핸드폰을 빼앗고 채혈은 왜 하는 겁니까? 혹시나 유사 상황 속에서 DNA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추측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일하게 핸드폰을 바꾸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대한민국이 이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국회에서 해제해서 그나마 평화를 찾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답식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계엄 해제 다음 날인 5일 오후에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서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나타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사기관과 그리고 공무원과 정치인들한테 경고하겠습니다. 이 불법·위헌 비상계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90 조 제2항인데 아마 주요 피의자들을 처리한 다음에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수사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선전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조은석 감사원장직무대리께 묻겠습니다.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또 체포하려면 수색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관저는 공무상 시설일지언정 군사시설은 아니거든요. 수색은 어떤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내란수괴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 범죄였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있었지만 윤석열 내란수괴는 불소추특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내란수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글쎄, 제가 어쨌든 검사생활 할 때 알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와 수색이 구분되는데요. 수색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수색을 할 수 있는데 공무소나 이런 데는 승인 없이, 다만 수색은 가능하고 수색은 막을 수가 없고 압수할 때만 공무상 비밀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할 때도 국익에 관한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는 승인을 거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취지는 그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색할 때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에 수색 여부에 수색하려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결정이 난 다음에 구속이 됐잖아요.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 말씀하십니까?

○이건태 위원 예.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대통령 소수가 가능한 범죄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소수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었고요 좀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때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유를 여기다 비교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위법한 것이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인 것이지 용인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법 집행에 있어서 성역은 없는 거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태 위원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감찰이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 조은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호처장께서 경찰 출신인데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법 규정도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불법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 감사원은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서들이 전담된 여러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더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수행될 것입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형법상 내란의 정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폭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때 병력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 국회의사당을 봉쇄한 것, 이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비상계엄의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것은 통치행위의 주장이 맞지 않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판례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에도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의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판결이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목적으로 한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지금 그 문제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내란의 공범인 군 인사들은 상관인 대통령의 지휘에 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1항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그런 의무가 행동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대법원 판례는 명백한, 위법한 불법 명령에는 상관의 직무상 지휘 명령이라 하더라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와 같은 강령이 있고 그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라서 계엄에 동조한 이런 공범들은 다른 사처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범죄 성립 여부가 말씀하신 그와 같은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이나 또 판례, 저희가 중요하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한덕수 권한대행은 비선출 권력으로 지금 선출 권력은 사실상 유일한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행사의 대행은 국회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여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이나 임면권 이런 행사는 국회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그 부분은 행사 주체가 헌법 취지에 비추어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전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뭡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 이 말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사법부가 내란수괴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가, ‘브루투스 너마저’ 하는 시저의 심정입니다.

법제처장, 박정훈 대령이 핸드폰 바꿨다는 소리 들었어요?

공수처장, 핸드폰 바꿨다는 얘기 들었어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들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못 들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들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박정훈은 핸드폰 바꾼 적이 없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는 바꾼 적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박정훈 대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아, 박정훈 대령.

○**박지원 위원** 없어요. 이게 정의로운 군인이고 정의로운 장관들이 할 일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저희들이 조회를 하니까 아직 바꿨다는 기록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할 것 다 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사무처장님, 헌법재판소는 가장 중요한 덕목 1호가 정치적 중립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많은 의혹이 있는, 말썽이 있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이하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않아요.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대법원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은 다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다릅니다.

○**박지원 위원** 헌법재판관은 개별적으로 심리도 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주심 헌법재판관이 자꾸 딜레이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이 기일 선정 등 진행을 하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박지원 위원**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사무처장께서는 재판관들에게 전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도 8 대 0, 그때도 헌법재판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수냐 진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마는 8 대 0으로 인용을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에게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문서를 전달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비상계엄 지금 만들어라’, 즉 계엄 예비비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런 명확한 내란행위기 때문에 현재에서 잘 재판해 주기 바랍니다.

꼭 말씀 전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심리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 혹시 지금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알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찰대 2기 수석 졸업하고요 재학 중에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한 엘리트 경찰이고요, 마포경찰서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합리적인 분이에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가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아마 법대로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체포영장을 들고 가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꼭 혼자 가지 마시고 언론하고 같이 가세요. 경찰하고 같이 가세요. 그분이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찰하고 공조를 해서 경찰, 공수처, 언론 같이 가세요. 그러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물리력을 써서 불법적으로 막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그런 부분 공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쪼는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좀 더, 비상사태이고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지키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하여튼……

○서영교 위원 그러는 사이에 증거가 다 인멸되는 거예요.

○박지원 위원 그러는 사이에 검찰한테 뺏기지.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님, 두려움 없이 법 집행하세요. 아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정청래 조배숙 주진우

###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김현 문정복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감사원장 권한대행 조은석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교정본부장 신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제처

처장 이완규

교육부

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정향미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 ○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 ○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